

2022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교사노동조합

단체협약 이행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노사협력과]

차 례

I. 단체협약 이행계획

• 전문	3
• 제1장 총칙	3
• 제2장 노동조합 활동	5
• 제3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	15
• 제4장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61
• 제5장 교권	82
• 제6장 교원 후생복지	95
• 제7장 학생복지	102
• 부칙	109

II. 2022년 단체협약서	111
-----------------------	-----

I

단체협약 이행계획

전 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인천교사노동조합(이하 “인천교사노조“라 한다)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 및 공립학교 교원인 인천교사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이 협약에서 학교는 공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를 모두 포함한다. 교육청은 본 협약의 내용 중 공사립 교원의 지위 향상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2조 【협약의 존중 및 타 단체와의 관계】

- ① 교육청은 본 협약 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교사노조와 협의 없이 그 내용을 저하시킬 수 없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인천교사노조와 체결한 협약과 다른 단체의 교섭요구안이 상충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인천교사노조와 사전 협의한다.
- ③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에게 타 교직단체 및 공무원노조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불평등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없도록 한다.

소관부서	노사협력과(교직·공무원단체팀)	연락처	4208-322
------	------------------	-----	----------

□ 근거

- ◆ 교원노조법 제2조, 제6조
- ◆ 사립학교법 제4조, 제55조

□ 이행 계획

- ◆ 단체협약 체결내용 전 기관 홍보 및 이행계획 작성 배포
- ◆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교사노동조합 단체협약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제3조 【조례·규칙의 제·개정】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교사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노사협력과(교직·공무원단체팀)	연락처	4208-322
------	------------------	-----	----------

□ 근거

- ◆ 행정절차법 제44조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

□ 이행 계획

- ◆ 교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할 경우에 입법예고 사항을 교육청 업무포털 K-에듀파인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하여 사전에 입법사항 등을 안내
- ◆ 교사노동조합이 제출한 의견에 그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 검토·반영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① 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소관부서	노사협력과(교직·공무원단체팀)	연락처	4208-322
------	------------------	-----	----------

□ 근거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이행 계획

- ◆ 법령이 정하는 내에서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음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② 교육청은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단위학교장이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노사협력과(교직·공무원단체팀)	연락처	4208-322
------	------------------	-----	----------

□ 이행 계획

- ◆ 단체협약 체결내용 전 기관 홍보(공문시행) 및 이행계획 작성 배포
- ※ 전 교직원 대상 연수는 서면 연수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③ 다음 각 호의 조합 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
2.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의 정책협의회
3. 대의원과 중앙위원으로서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참석
4. 노조 집행위원으로서 집행위원회 참석
5. 조합원 대상 연수 및 행사
6. 집행부의 조합원 대상 교원노조 업무 수행

소관부서	노사협력과(교직·공무원단체팀)	연락처	4208-322
------	------------------	-----	----------

□ 근거

-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제19조(공가)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출장)
-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공가)

□ 이행 계획

- ◆ 제4조 제3항 1호 사유 발생시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학교에 협조 요청
- ◆ 조합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법한 절차(학교장의 허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함
- ※ 이 때 적법한 절차란 교원노조에서 회의 일시, 내용, 참석자 명단 등 회의개최 계획을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해당 학교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교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④ 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사노조가 주관하는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내·외 조합원 교육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노사협력과(교직·공무원단체팀)	연락처	4208-322
------	------------------	-----	----------

□ 이행 계획

◆ 절차

-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수내용, 일시 및 시설이용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신청
- 학교장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함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⑤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사 노사관계 형성과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의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사관계의 이해 연수 실시와 인천교사노조의 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교육청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에서 교직원단체 홍보 자료의 게시 및 배포를 허용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5 4208-406
----------------	--------------------------------	-----	----------------------

□ 근거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 2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연수기간) 및 별표2

□ 이행 계획

- ◆ 연수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인천교육연수원에 협조 요청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⑦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의 전임자가 임기를 마치고 복귀할 시에는 원칙으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404 4208-371
----------------	--------------------------------	-----	----------------------

□ 근거

-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3조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제3항

□ 이행 계획

- ◆ 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 만료 시 원직교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후임 충원이나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 및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발령할 수 있음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⑧ 교육청은 다른 교섭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교육청 홈페이지 하단 배너영역에 인천교사노조 홈페이지 연결 배너를 설치한다

소관부서	정보지원과(정보시스템팀)	연락처	4207-622
------	---------------	-----	----------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운영지침(2019. 5.)

□ 이행 계획

- ◆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배너에 인천교사노조 배너 등록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⑨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학교 내 게시판 설치를 희망할 경우 학교 시설 사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노사협력과(교직·공무원단체팀)	연락처	4208-322
------	------------------	-----	----------

□ 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 이행 계획

- ◆ 단체협약 체결 알림 및 이행계획 통보를 통해 학교에 게시판 설치 시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 기존 학교 교무실 내 주 게시판에 교원노조 홍보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노조 01254-390, 2000. 05. 12.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조합원인 교원이 조직적으로 근무시간 중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면서 팩스, 메일, 서명엽서 등을 작성, 발송하여 복무관련 법령이나 학교규칙 등을 위반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가 가능할 것임(노조01254-390, 2000.5.12)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⑩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 활동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소관부서	노사협력과(교직·공무원단체팀)	연락처	4208-322
------	------------------	-----	----------

□ 근거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이행 계획

- ◆ 홍보활동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함

※ 홍보활동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란?

: 유인물(신문, 간행물, 소식지 등) 배포, 행사안내(유인물) 등을 말함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⑪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최하는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에 인천교사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각 과(관) 공통	연락처	4208-322
------	-----------	-----	----------

□ 이행 계획

- ◆ 각 부서에 2022년 단체협약 내용을 공문으로 알려 세미나, 공청회 등에 인천교사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⑫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 전임자 허가 신청 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한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승진, 연금산정, 전보인사 또는 그 밖에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1 4208-407
------	------------------------------	-----	----------------------

□ 근거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 ◆ 교원노조법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15조 제5호

-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3조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경력 의 기간계산)
- 이행 계획
 - ◆ 인천교사노조 전임자의 관련 사항은 법률과 규정에 의거 시행
 - ◆ 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 만료 시 원적교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령
 - ◆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협약내용 준수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⑬ 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분기별 4시간 이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	--------------	-----	----------

- 근거
 -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제41조
 -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 이행 계획
 - ◆ 학교 실정에 따라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권장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⑭ 인천교사노조가 지정하는 전임자에게 ice-talk 메신저 계정을 제공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정보지원과(정보기획팀)	연락처	4207-605
------	--------------	-----	----------

- 이행 계획
 - ◆ ice-talk 메신저는 전교직원이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 전임자도 사용 가능
 - ◆ ice-talk 메신저에 ‘인천교사노조’ 계정 생성하는 방법 안내

제5조 【노조 활동 중 재해】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의 전임자 또는 비전임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 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총무과(총무팀)	연락처	4206-507
------	----------	-----	----------

□ 근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이행 계획

- ◆ 공무원요양승인 절차
 - 청구인 공무원요양승인신청서 작성하여 소속 연금취급기관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청구
 - 연금취급기관의 경위조사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제출
 - 인사혁신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 ◆ 추진방향
 -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협의와 정책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원의 질병 및 사고 등의 공무원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함
 - 다만, 연금취급기관으로서 청구된 사건이 공무원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경위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시 협조
 - 또한, 교원이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이 있을 경우에 공무원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시 의견 제출

제6조 【인천교사노조와 사전 협의】

교육청은 공무원노조 등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교사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소관부서	노사협력과(교직·공무원단체팀)	연락처	4208-322
------	------------------	-----	----------

□ 이행 계획

- ◆ 공무원단체 등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교사노조의 의견 청취

제7조 【부당노동행위 예방】

- ①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원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연수 과정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사 관련 과목의 개설·운영에 있어 사전에 교원노조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인천시교육청교육연수원(교원연수부)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기획운영과)	연락처	7450-131 4589-363
-------------	---	------------	----------------------

□ 근거

- ◆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 이행 계획

<교육연수원>

-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자격연수, 신규 임용(예정) 교사 및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등에 교원단체의 이해 등 건전한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한 과목이 포함되도록 교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해당 과목 개설 시, 해당 단체와 소통 및 협력하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유아교육진흥원>

- ◆ 인천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 교원단체 홍보시간을 포함한 교원노동 관련 과목을 2시간 이상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권장(☞건전한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한 과목이 포함되도록 편성하겠음)

제8조 【시설 편의제공】

- ①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사무실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통상적인 비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노사협력과(교직·공무원단체팀)	연락처	4208-324
-------------	------------------	------------	----------

□ 근거

- ◆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 이행 계획

- ◆ 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천교사노조에 사무실 및 비품 제공(완료)

- ◆ 인천교사노조의 사무실 사용 비품 요구가 있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전 지원한 비품의 내용연수 등 적절한 검토를 거쳐 지원
- ◆ 인천교사노조의 시설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제9조 【조합비 일괄 공제】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대상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동의한 조합원에 한하여 인천교사노조에 공제내역을 통보한다.

소관부서	교육재정과(경리팀)	연락처	4206-584
------	------------	-----	----------

□ 근거

- ◆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 2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이행 계획

- ◆ 급여 유의사항 안내로 각 기관에서 원천징수동의서 징구 후 급여에 반영 처리
- ◆ 원천공제된 인천교사노조 조합비 명단과 금액을 노조 조합비 담당자에게 e-메일로 매월 전송하고 조합비는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

제10조 【통지 및 문서 발송 편의제공】

①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 정보에 대하여 열람과 사본의 제공을 허용한다.

소관부서	노사협력과(교직·공무원단체팀)	연락처	4208-322
------	------------------	-----	----------

□ 근거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0조

□ 이행 계획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며, 비공개 사유가 없는 정보는 공개 원칙

제10조 【통지 및 문서 발송 편의제공】

②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 교육청 제공 사항
 - 가. 교육청 및 직속 기관의 조직표
 - 나. 교육통계연보 등 교육청 등록 각종 간행물
 - 다. 각급 학교에 보내는 공문 중 노조가 요구한 공문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교육정책 관련 등)
 - 라.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사항
 - 마. 단체협약 이행 관련 공문
 - 바.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등
 - 사. 각급학교에 배부되는 정부, 교육부, 교육청 간행물 중 노조가 요구한 자료
2. 인천교사노조 제공 사항
 - 가. 규약의 변경사항
 - 나. 인천교사노조의 임원 현황
 - 다. 인천교사노조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소관부서	각 과(관) 공통	연락처	4208-322
------	-----------	-----	----------

□ 이행 계획

- ◆ 위 협약과 관련 각종 자료 생산 시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 상호 간 자료를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

제10조 【통지 및 문서 발송 편의제공】

③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교육청에 각종 문서를 발송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첩을 요구할 경우 교육적으로 필요한 문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노사협력과(교직·공무원단체팀)	연락처	4208-322
------	------------------	-----	----------

□ 근거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 이행 계획

- ◆ 인천교사노조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문서를 발송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과로 즉시 배부
- ◆ 인천교사노조에서 요구할 경우 교육적으로 필요한 문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학교로 문서 이첩을 시행

제11조 【정책협의회 구성 · 운영】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사항 협의, 인천교육정책,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 운영한다.

1. 협의는 반기별로 1회, 3시간 내로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 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측 협의에 의해 추가 개최한다.
2. 교육청 대표는 국장급 이상으로 하고, 1회는 교육감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협의 안건은 2주일 이전에 통보한다.
4. 개최시기-협의안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소관부서	노사협력과(교직 · 공무원단체팀)	연락처	4208-322
-------------	--------------------	------------	----------

□ 이행 계획

- ◆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제출
- ◆ 교육청도 국정감사, 시의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인천교사노조와 일시, 참석 인원, 절차 등을 협의하여 정책협의회 개최

제3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

제1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 ①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 처리 단계에서는 원자료 열람 요청 처리,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 활용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 관리자인 교감이 직접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5 4208-406
----------------	--------------------------------	-----	----------------------

□ 근거

-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7조, 제15조, 제19조

□ 이행 계획

- ◆ 2022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동료 교원이 참여하지 않음
- ◆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 ◆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관리자(교감, 원감)가 작성 및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제13조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를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교원 차등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인사팀)	연락처	4208-408
------	------------	-----	----------

□ 근거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이행 계획

-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관련 부서에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를 위한 지속적인 의견 및 안건 제출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교육청은 2급 정교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409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4208-376

□ 근거

-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제2항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항

□ 이행 계획

-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계획 학교 안내 및 대상자 추천을 통한 연수 기회 제공
- ◆ 인천시교육청교육연수원의 시설 및 인력 범위 내에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인원 확대를 위해 노력
- ◆ 중등 희소과목인 경우 유사계열 과목 통합연수를 개설할 수 있도록 타시도 교육청 연수 담당자와 협의
- ◆ 연수기관 확충을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 인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노력함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②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대한 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연수 여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단, 학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제외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408,409

□ 근거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

□ 이행 계획

- ◆ 교육청 연수 경비 예산 편성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필요한 연수경비 지원
- ◆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있음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③ 교육청은 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연수 기관에 납부하는 연수경비의 교원 1인당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출장처리 할 수 있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인사팀)	연락처	4208-408

□ 근거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지정연수) 및 제8조(연수비의 지급 등)

□ 이행 계획

- ◆ 특수분야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의 연수경비는 단위학교에서 지급하는 ‘교원자율연수비’ 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 ‘교원자율연수비’ 는 단위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이관된 사업으로 학교자체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 가능 안내
- ◆ 관련 부서에 학교기본운영비(학교이관사업) 증액 지원 의견 제출 예정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④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는 학교당 일률적인 인원배정을 지양하고 연수 대상자는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단, 의무연수과정은 예외로 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인사팀)	연락처	4208-408
------	------------	-----	----------

□ 근거

-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이행 계획

- ◆ 연수 과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교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직무연수 실시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⑤ 교육청은 초등학교 과학과 실험 연수와 관련하여 교사의 연수선택권을 존중하며 질 높고 다양한 형태의 연수로 개설하되,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관부서	창의인재교육과(기후생태과학교육팀)	연락처	420-8479
------	--------------------	-----	----------

□ 근거

- ◆ 2022학년도 인천광역시 과학교육 추진계획
- ◆ 2022학년도 초등과학교육중심학교(과학교육관) 운영 계획
- ◆ 교육공무원법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제4항제1호

□ 이행 계획

- ◆ 초등과학실험길라잡이연수, 과학교사테마 연수 등 초등학교 과학과 실험 연수와 관련한 연수를 개설하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 내실 있는 연수 교육과정 구성 및 과정 다양화 검토
- ◆ 연수 계획(연수시기, 연수시간, 연수프로그램 등) 수립 시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연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
- ◆ 연수 참가자가 다소 부족한 경우 연수에 대한 추가 안내를 통해 연수 운영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⑥ 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주관 연수프로그램 편성 시 교원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인천교사노동조합에서 의사를 개진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교육연수원 (기획운영부) 유아교육진흥원(기획운영과)	연락처	745-0121 4589-363
------	---------------------------------	-----	----------------------

□ 근거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제8조의 2
-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연수운영규정 제9조
- ◆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37조

□ 현황

- ◆ 인천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운영 시 연수운영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개설 희망 프로그램, 개설 희망 이유, 추천 강사 등에 관한 교원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프로그램이 편성되도록 연수를 운영 중

□ 이행 계획

- ◆ 인천교육연수원과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편성 시 인천교사노동조합에서 개진한 의견에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반영
- ◆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편성 시 연수운영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설 희망 프로그램, 개설 희망 이유, 추천 강사 등에 관한 교원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프로그램이 편성되도록 연수 운영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⑦ 교육청은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4208-375
----------------	--------------------------------	-----	----------------------

□ 근거

-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제41조

□ 이행 계획

-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근무지 외 연수 활동 지원 안내
- ◆ 휴업일 중 제41조 연수 사용은 개별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해 승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⑧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장·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자격연수가 학기와 중복될 경우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보강을 실시할 강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404 4208-375
------	------------------------------	-----	----------------------

□ 근거

- ◆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이행 계획

- ◆ 근거 지침에 의하여 연수교원 대체 시간강사 임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 ◆ 인천교육연수원의 경우 방학 중에 각종 연수들이 집중되어서 수용의 한계가 있으나, 교원들의 자격연수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우선권을 두고 시기 조정 및 연수 운영을 위해 노력함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⑨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를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자율연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	--------------	-----	----------

□ 근거

-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 이행 계획

- ◆ 국외 자율연수 시 연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 후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안내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⑩ 교육청은 민간·공공기관(단체)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특수분야 연수기관 심의·관리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하며, 연 2회 신청·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연 1회 추가 신청·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인사팀)	연락처	4208-408
------	------------	-----	----------

□ 근거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4

□ 이행 계획

- ◆ (이행완료) 민간·공공기관(단체)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연 4회 신청·심의하고 있음

※ 관련: 2022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 알림(중등교육과-6464, '22. 3. 2.)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⑪ 교육청은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은 이후에 교사가 희망할 경우, 교과별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일정 기간마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인사팀)	연락처	4208-408
------	------------	-----	----------

□ 근거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이행 계획

- ◆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적극 권장하고 안내
- ◆ 재교육과 자기연찬 강화를 위해서도 생애주기별 재교육 연수를 받도록 안내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⑫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기중 선발연수에 교사가 선발되었을 경우, 강사 채용을 통해 해당 교사가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410
------	--------------	-----	----------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이행 계획

- ◆ 출장, 연수 등으로 인한 교원 결원 발생 시 교원대체 인력 임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⑬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내 자율장학 계획 외에 별도로 수업장학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유아교육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4208-362, 379 4208-248
------	--	-----	---------------------------

□ 근거

- ◆ 2022 초등 수업지원계획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 이행 계획

- ◆ <초등교육과> 학교 교내 수업장학은 사전협의를 통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되도록 안내
- ◆ <중등교육과> 학교 교내 수업장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되도록 교장(교감)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하여 안내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⑭ 교육청은 자율연수비 지원을 유, 초, 중, 고, 특수, 기타, 각종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

- 가. 교육부 장관 및 17개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자율연수(특수분야, 원격연수와 관련된 연수 경비: 학습 중인 연수 교재비 포함)
- 나. 교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 연수 (예: 교과교육, 생활지도(교육), 상담 등)
- 다.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
- 라. 직무 관련 공인(국가, 민간) 자격증 취득 연수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인사팀)	연락처	4208-408
------	------------	-----	----------

□ 근거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 교육부 「2022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

□ 이행 계획

- ◆ 교원들의 지도 역량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예산 확보 및 연수 기회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⑮ 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율연수비를 지원할 때 교원 1인당 연수 경비를 횡수 제한 없이 연수경비(여비제외)의 100%(최대 250,000원)까지 하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인사팀)	연락처	4208-408
------	------------	-----	----------

□ 근거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

□ 이행 계획

- ◆ ‘교원자율연수비’ 는 단위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이관된 사업으로 학교자체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 가능 안내
- ◆ 2023학년도 교원자율연수비 최대 250,000원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학교에 안내함

제15조 【연구 환경 조성】

① 교육청은 교사들이 자율적인 교과 모임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며, 전문성 있는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소관부서	미래학교혁신과(미래학교혁신팀)	연락처	4208-233
------	------------------	-----	----------

□ 근거

-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기본 계획

□ 이행 계획

-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모 계획 사전 안내를 통해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 ◆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고 있음

제15조 【연구 환경 조성】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 및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미래학교혁신과(미래학교혁신팀)	연락처	4208-233
------	------------------	-----	----------

□ 근거

- ◆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 이행 계획

- ◆ 학교 전체 교직원의 교수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 사업비 관련 안내가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지침에 반영되어 있음
- ◆ 학생중심·수업중심의 배움과 실천을 위해 자율성·자발성을 기초로 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 교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천공동체 활동 지원
- ◆ 연수 및 연구 활동, 교육 실천, 결과 공유로 이루어진 교원학습모임 지원

제15조 【연구 환경 조성】

③ 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학습 연구년제가 합리적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5 4208-405
----------------	--------------------------------	-----	----------------------

□ 근거

- ◆ 교육공무원법 제40조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

□ 이행 계획

- ◆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학습 연구년제가 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15조 【연구 환경 조성】

④ 교육청은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에 교과·학년별 연구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교과·학년 협의회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교육시설과(시설팀) 미래학교혁신과(미래학교혁신팀)	연락처	4207-669 4208-233
------	--------------------------------	-----	----------------------

□ 근거

- ◆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기본 계획

□ 이행 계획

<교육시설과>

- ◆ 학교신설 설계 시 연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과·학년별 연구실을 반영하여 설계 및 공사하고 있음

<미래학교혁신과>

- ◆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과·학년별 연구실이 학교 여건에 따라 설치되어 있음
- ◆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지침」에 근거한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교과·학년 협의회비를 지원하고 있음

제15조 【연구 환경 조성】

⑤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교원의 교육강사 수당 강사료 기준 변경 시 관련 부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예산팀)	연락처	4208-288
------	--------------	-----	----------

□ 근거

- ◆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이행 계획

- ◆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립 시 각 기관 및 부서에 공문게시를 통해 일정 기간 의견수렴 및 검토 시행함

제15조 【연구 환경 조성】			
⑥ 교육청은 교원이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경우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4208-375

□ 근거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제8장

□ 이행 계획

- ◆ 교원이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수강 희망 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 수강 허용

제16조 【컨설팅 장학】			
컨설팅 장학은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장학 위원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유아교육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4208-362, 379 4208-248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 ◆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이행 계획

<초등교육과>

- ◆ 교수학습 컨설팅 등 학교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지원 중심의 컨설팅 장학을 시행 하고 있음
- ◆ 학교의 자발적 참여와 희망에 따른 자율 신청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원
- ◆ 소통, 공감, 토의, 토론을 강조하는 컨설팅장학으로 학교 문화 개선
- ◆ 초등 수업-평가 지원단 연수로 역량 강화 추진

<중등교육과>

- ◆ 컨설팅 장학은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장학 위원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교장(교감)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하여 안내

제17조 【연구·시범학교 및 각종 공모사업 운영 개선】

① 교육청이 자체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 공모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이전(전년도 말)에 완결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학기 중에 추가로 공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소관부서	학교지원단(학교행정지원과)	연락처	453-1642
------	----------------	-----	----------

□ 근거

- ◆ 2022 공모사업혁신운영제 시행 계획[정책기획조정관-14811(2021.12.7.)]

□ 이행 계획

- ◆ 2022 공모사업혁신운영제 시행 계획에 이미 반영함
- ◆ 상한제 적용사업과 같은 기본적인 공모사업의 공모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이전(전학년도 말)에 완결하여 학기 중에 추가로 공모하는 일이 없도록 전년도 하반기 부터 준비

제17조 【연구·시범학교 및 각종 공모사업 운영 개선】

②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연구·시범·교육실습협력학교 및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교직원협의회를 반드시 거쳐 교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응모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에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 대해 제반 사항을 전 교사에게 안내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학교지원단(학교행정지원과)	연락처	453-1642
------	----------------	-----	----------

□ 근거

- ◆ 2022 공모사업혁신운영제 시행 계획[정책기획조정관-14811(2021.12.7.)]

□ 이행 계획

- ◆ 2022 공모사업혁신운영제 시행 계획에 이미 반영함
- ◆ 모든 사업은 공모단위 구성원 내의 충분한 토론 및 숙의 과정 등을 통한 실질적 소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 신청 여부 결정을 위해 전 교원의 온라인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
- ◆ 공모사업 혁신운영제 시스템에서 무기명 투표하여 교원의 50% 이상이 동의한 사업만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 투표 실시 전에 토론과 숙의 과정을 먼저 진행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체 취지에 맞도록 공모사업 신청할 것과 단위학교 투표에서 부결된 공모사업에 대한 재투표 및 재공모 금지도 안내하고 있음

제17조 【연구·시범학교 및 각종 공모사업 운영 개선】			
③ 교육청은 연구·시범학교 공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다.			
소관부서	학교지원단(학교행정지원과)	연락처	453-1641

□ 근거

- ◆ 2022 공모사업혁신운영제 시행 계획[정책기획조정관-14811(2021.12.7.)]

□ 이행 계획

- ◆ 2022 공모사업혁신운영제 시행 계획에 이미 반영함
- ◆ 공모사업혁신운영제를 통해 상한제 적용사업을 단위학교당 최대 5개로 제한하여 단위학교 및 교원의 업무 과중 방지

제18조 【교원 승진 및 인사 제도 개선】			
① 교육청은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사승진체계가 마련되도록 교장, 교감 및 교육 전문직 인사의 임용 및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3 4208-403

□ 근거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임용의 원칙), 제13조(승진), 제14조(승진후보자명부)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승진임용방법), 제15조(특별승진임용),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 이행 계획

- ◆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교육 전문직 선발 시 현장 다면평가 실시
- ◆ 교원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가산점 개정 시 학교 의견 수렴을 선행하여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 ◆ 교장 공모제 활성화 및 공모교장 지원자의 교장 임용제청 기준 충족 여부 심사
- ◆ 인사관리원칙 개정을 위한 협의회에 교총 대표, 전교조 대표, 전문상담교사노조 대표, 인천교사노조 대표가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 반영
- ◆ 공립유치원 원장공모제 도입을 위해 노력

제18조 【교원 승진 및 인사 제도 개선】			
② 교육청은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1 4208-404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초등) 제26조

□ 이행 계획

- ◆ 인사관리협의회 구성 안내 및 참석인원 배정을 안내하여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제18조 【교원 승진 및 인사 제도 개선】

③ 교육청은 학교가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지정을 신청할 때, 사전에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4 4208-406
----------------	--------------------------------	-----	----------------------

□ 근거

-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 ◆ 교육부 교장공모제 업무 처리 지침

□ 이행 계획

- ◆ 교장공모제 학교설명회를 통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제19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도록 지도한다. 각 학교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교무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2.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교과 전담교사와 학급 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4. 포상 후보자와 해외 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②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에 대하여 학교장은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1 4208-404
----------------	--------------------------------	-----	----------------------

□ 근거

-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제35조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초등 제27조, 중등 제17조)

□ 이행 계획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및 각 교육지원청 인사관리세부기준 고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인사자문위원회 회의 결과가 존중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제20조 【교원인사관리 원칙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은 교원 인사 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인천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1 4208-403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초등) 제26조

□ 이행 계획

- ◆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인사관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제21조 【전보 제도】			
① 교육청은 교사초빙제가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하고, '교사초빙제 운영 지침' 유의사항의 적용을 지도하여 초빙교사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시 학사 일정과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1월 안에 실시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1 4208-404

□ 근거

-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초빙교원) 제2항, 제3항
-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18조 및 20조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사초빙제 실시 계획

□ 이행 계획

- ◆ 교사 초빙제 운영 지침 및 취지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사초빙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 학교설립과의 학급 확정 시기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음

제21조 【전보 제도】			
③ 교육청은 성희롱 및 교권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긴급 전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1 4208-404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1조 【전보 제도】			
④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본인의 전보 자료를 공개 요청할 경우 본인의 자료에 한하여 공개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1 4208-404

□ 근거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

□ 이행 계획

- ◆ 관련법령에 의거 본인의 전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공개하겠음

제21조 【전보 제도】			
⑤ 교육청은 교육과정운영과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원의 희망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4208-371

□ 근거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21조 【전보 제도】			
⑥ 교육청은 전입 예정 학교에 업무분장, 임시 출근 등의 사유로 방문해야 할 때 현 소속 학교에서 출장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4208-375

□ 근거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 이행 계획

- ◆ 인사발령 명령을 받고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해 정규 근무 외의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

제22조 【법정 교원 수 확보 및 교육 지원 강화】			
① 교육청은 정규직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행 · 재정적 노력을 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0 4208-375

□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이행 계획

- ◆ 인천의 특수성 및 지역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정원 증원 요구 중임

제22조 【법정 교원 수 확보 및 교육 지원 강화】			
② 교육청은 학교에서 사회복지요원을 신청할 경우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비상계획팀)	연락처	4208-353

□ 근거

- ◆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 사회복지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0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 이행 계획

- ◆ 다음연도 소요 자원을 매년 2월까지 접수하고 있으나, 학교(유치원)에서 필요 시 다음연도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에도 상시접수하여 소요인원 반영
- ◆ 우리 교육청의 사회복지요원 배정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병무지청 담당 부서에 협조 요청

제22조 【법정 교원 수 확보 및 교육 지원 강화】			
③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하 수준이 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학교설립과(학생배치팀)	연락처	4206-523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 이행 계획

- ◆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하여 지속 노력
 - * 2021. 7.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의거 급당 학생수 기준: 28명
- ◆ 2022학년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23.3명으로 학생수 감소, 학교신설로 지속 감소 추진 (2028년 학급당 평균 20.0명 이하 감소 예상)
- ◆ 중·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을 통한 적기 학교신설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 광범위한 학교군으로 개발지역 학교신설 곤란하여 2022년도 학교군 개정 연구용역 추진 → 송도, 청라, 검단 등 별도 학교군 설정 검토

- ◆ 모듈리교실, 증축, 보통교실 전환 등 편성 학급 증가를 통한 급당 학생수 감축

제23조 【학습지도안의 자율적 작성】			
① 교육청은 학습지도안, 주간학습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폐지하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이수 집계표는 수기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연간지도계획은 교과, 학년 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초등교육과정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4208-379, 362 4208-392

□ 근거

-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 이행 계획

- ◆ 공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반영

제23조 【학습지도안의 자율적 작성】			
② 교육청은 교내 장학 수업 및 학부모 공개수업 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초등교육과정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4208-379, 362 4208-392

□ 근거

- ◆ 2022 초등 수업지원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① 교육청은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소관부서	학교지원단(학교행정지원과)	연락처	453-1641

□ 근거

- ◆ 교육감 공약 [6-47] 교육활동 중심 학교를 위한 ‘학교업무정상화’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정책기획조정관-3714(2022.2.28.)]

□ 이행 계획

- ◆ 해당 내용은 우리교육청 주요역점사업 중 하나임.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 계획에 관련 내용을 이미 반영하였고, 미이행시 해당학교 컨설팅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 ◆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식 개발을 위한 <2022 제7기 학교업무정상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 마련 및 단위학교 컨설팅 지원 예정
- ◆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관련 <2022 제1차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에서 IT기술을 활용한 업무효율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2022.4.13.).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관련한 유의미한 자료가 개발될 경우, 우리교육청에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② 교육청은 학교 업무 분장 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업무표준안 작성을 위한 사업부서별 업무협의회 운영 시 인천교사노조를 포함한다.

소관부서	학교지원단(학교행정지원과)	연락처	453-1641
------	----------------	-----	----------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정책기획조정관-3714(2022.2.28.)]

□ 이행 계획

- ◆ 학교 업무 분장 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안내
- ◆ 학교 업무표준안 작성을 위한 사업부서별 업무협의회 운영 시 인천교사노조를 포함 하겠음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③ 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직종별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시 관련 교사를 포함하여 협의하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노사협력과(노무지원팀)	연락처	4208-334
------	--------------	-----	----------

□ 이행 계획

- ◆ 직종별 업무표준안 마련 계획 수립 시 관련 교사를 포함하여 협의하도록 소관부서에 안내하겠음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④ 교육청은 법정 장부 이외의 학교장 장부, 비업무 승인장부, 기타 장부는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되,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교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치하도록 지도한다.			
⑤ 교육청은 외부행사 안내, 각종 소식지, 공통지시 전달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노력하되, 학부모의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학교지원단(학교행정지원과)	연락처	453-1641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정책기획조정관-3714(2022.2.28.)]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이미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 공문으로 안내 하였음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⑥ 교육청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교육외적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차인권교육팀)	연락처	4208-262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5조

□ 이행 계획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전 기관 안내
- ◆ 교육청 소속 인권보호관을 통한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⑦ 교육청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회의록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소관부서	학교지원단(학교행정지원과)	연락처	453-1641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정책기획조정관-3714(2022.2.28.)]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이미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 공문으로 안내 하였음
- ◆ 법정회의록과 비법정회의록으로 나누어 회의록 작성 여부, 작성방법, 회의록 확인 및 결재 방법을 세분화하여 간소화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⑧ 교육청은 학교장이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여 결재과정을 간소화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학교지원단(학교행정지원과)	연락처	453-1641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정책기획조정관-3714(2022.2.28.)]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이미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 공문으로 안내 하였음
- ◆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위임·전결 권장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교장 30%, 교감·행정실장 30%, 부장교사(담당교사) 및 업무담당자 40%)
- ◆ 미이행 시 해당 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⑨ 교육청은 국회·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급적 이미 구축된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소관부서	감사관(감사총괄팀) 소통협력담당관(대외협력·의회팀)	연락처	4208-144 4403-049

□ 근거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정책기획조정관-3714(2022.2.28.)]

□ 이행 계획

- ◆ 국회·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각부서 및 학교로 요구하기 전 교육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우선 처리하며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도록 노력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⑩ 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과서 관련 업무 중 교과서 선정 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지도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4208-254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제30조(주문), 제31조(공급)

□ 이행 계획

- ◆ 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과서 관련 업무 중 교과서 선정 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안내
- ◆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와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각 학교에서 외부인력 활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⑪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교사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차인권교육팀)	연락처	4208-272
------	----------------------	-----	----------

- 근거
 -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이행 계획
 - ◆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⑫ 교육청은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 학교별 추천 인원 에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창의인재교육과(기후생태과학교육팀)	연락처	420-8477
------	--------------------	-----	----------

- 근거
 - ◆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 2022 인천광역시영재교육추진계획(2022.2.24.)
- 이행 계획
 - ◆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 학교별 추천 인원의 제한을 영역별로 단계적으로 완화 예정
 - ◆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지속적인 안내로 학교현장의 혼란 최소화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⑬ 교육청은 교사의 방과후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예산 관련 업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를 포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학생복지팀)	연락처	420-8339
------	----------------	-----	----------

- 근거
 - ◆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 이행 계획
 - ◆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 및 컨설팅 시 현장 의견 청취
 - ◆ 4세대 나이스 시스템 업무별 협의(방과후학교 분야) 시, 예산 관련 업무 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 요청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⑭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돌봄 관련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학생복지팀)	연락처	4208-295

- 근거
 -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안내(정책기획조정관-2203, 2022.2.9.)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으로 이미 반영됨
 - 교사가 담당하던 돌봄 관련 행정 업무를 초등돌봄전담사에게 이관
 - 초등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업무 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초등 ‘돌봄교실 업무’ 는 돌봄전담사가 전담하는 방향으로 지도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⑮ 교육부 지침(교수학습평가과-5336, 2021. 8. 9.)에 따라 교육청은 방역 인력 채용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⑯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전문업체가 실시하는 연 1회 이상의 교내외 대청소를 예산에 편성·운영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체육건강교육과(학교보건팀)	연락처	4208-447

- 근거
 - ◆ 유·초·중등학교 2학기 학사운영방안 안내(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5336(2021. 8. 9.)
- 이행 계획
 - ◆ 각 학교 예산 범위내에서 전문업체를 활용한 대청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⑰ 교육청은 방과후강사, 기간제 교사 등의 성범죄 조회 업무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학교생활교육과(성인지교육팀)	연락처	3200-093

- 근거
 - ◆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이행 계획
 -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지침 배부 시 성범죄 조회 업무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안내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⑰ 교육청은 관계회복과 소통중심의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이 정한 바 이외에 불필요한 보고 및 공문발송 등을 축소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학교생활교육과(회복적생활교육팀)	연락처	4208-482
------	-------------------	-----	----------

□ 근거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 ◆ 2022 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이행 계획

- ◆ 매년 1~2월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개정 및 보완 검토를 통해 현행 법률이 근거한 보고 외 불필요한 보고 최소화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 지속
- ◆ 2022.3.1.자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지원시스템 도입 후 학교폭력 사안 보고 및 처리 절차 간소화(문서 내부승인 및 시행문 발송 일원화)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⑱ 교육청은 법령에 의한 교직원 의무교육 및 연수(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를 통합개설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학년초에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학교생활교육과(회복적생활교육팀)	연락처	420-8488
------	-------------------	-----	----------

□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이행 계획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2022년 교원·교육감 소속 근로자·지방행정직 법정 의무연수 과정이 우리교육청 교육연수원에 개설됨
- ◆ 2022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 추진계획 안내[학교생활교육과-2688(2022.3.3.)]
-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안내[학교생활교육과-6303(2022.4.14.)]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⑲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CCTV관련 업무 추진 시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하고 관련 부서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학생안전체험관운영팀)	연락처	7709-870
------	-------------------	-----	----------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7
-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이행 계획

- ◆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CCTV 개선사업 안내 공문 발생 시 단체협약 내용이 각급 학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 문의 사항 시 관련 부서가 협조하여 추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⑳ 교육청은 스쿨뱅킹 미납 학생 독촉 업무 등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교육재정과(경리팀)	연락처	4206-573

□ 이행 계획

- ◆ 스쿨뱅킹 미납 학생 독촉 업무 등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안내 및 홍보하겠음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㉑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전출입 관련 업무분장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79

□ 근거

-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정책기획조정관-3714(2022.2.28.)]

□ 이행 계획

- ◆ 교육(지원)청 연수 및 관리자 자율장학협의회 등을 통해 전출입 관련 업무분장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안내

제24조 【교원 업무정상화】			
㉒ 교육청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답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학생안전체험관운영팀)	연락처	7709-868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이행 계획

- ◆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공문 발송 시 단체협약 내용이 각급 학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 권장한다.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㉔ 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및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통번역 및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동아시아시민교육팀)	연락처	4208-266
------	----------------------	-----	----------

□ 근거

- ◆ 헌법 제6조 제2항 및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91,비준)에 따라 한국 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권을 가짐
- ◆ 국정과제 51-2-2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 ◆ 교육감 공약사항 IV-29 어울림교육을 위한 ‘다문화 탈북 교육지원 강화 및 내실화’

□ 이행 계획

- ◆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외국인가정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
- ◆ 한국어학급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통번역학습보조원 지원으로 외국인가정 학생 학교 조기 적응 지원
- ◆ 다문화교육 전문가 양성 및 현장지원단 활용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컨설팅 추진

제25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① 교육청은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별 실정에 맞는 부서체계와 업무분장을 조직·운영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학교지원단(학교행정지원과)	연락처	453-1641
------	----------------	-----	----------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종합계획[정책기획조정관-3714(2022.2.28.)]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이미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 공문으로 안내하였음

제25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② 교육청은 수업시수 협의 시 학교별·교과별 교사 현황 및 특성,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학년, 교과협의회 등)을 거쳐 조정하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4208-245, 395
------	----------------	-----	---------------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항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인천광역시 중, 고 교육과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2-65호, 제2022-66호)

□ 이행 계획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인천광역시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및 지침 포함하여 배부
- ◆ 각급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및 담당자 연수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
- ◆ 학교별 특성에 맞게 수업시수를 정할 때, 교과협의회 또는 학년별 협의회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정하도록 지도

제25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③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사가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4208-375
----------------	--------------------------------	-----	----------------------

□ 근거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이행 계획

- ◆ 관련 예규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제25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④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복무 결재권자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 복무를 NEIS로 승인하며, 사전 대면 또는 구두 보고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4208-375
----------------	--------------------------------	-----	----------------------

□ 근거

-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 제5조(연가) 제1항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 이행 계획

- ◆ 교원 휴가의 결재 과정에서 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전 구두 보고나 대면 결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

제25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⑤ 교육청은 법령에 의무 규정되지 않은 서약서는 폐지한다.
(학생에게 징구하는 서약서:학교생활교육과)

소관부서	학교생활교육과(회복적생활교육팀)	연락처	4208-483
------	-------------------	-----	----------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생활교육 계획

□ 이행 계획

- ◆ 학생 대상 서약서 작성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폐지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은 생활 교육연합회, 관리자 자율장학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제25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⑥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은 단위학교에서 교사결원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제교사 운영 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사 및 시간 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410
------	--------------	-----	----------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 유아교육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 27조
-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 이행 계획

- ◆ 교원 결원 발생 시 지침에 따라 계약제교원 임용업무 전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음
- ◆ 정규교원 결원(1일 이상)에 대하여 계약제 교원 채용 가능하도록 노력

제25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⑦ 학교지원단은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운영하여 단위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및 강사 채용 시 필요한 서류를 지원한다.

소관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학교행정지원과 지원1팀)	연락처	4531-624, 626
------	---------------------------------	-----	---------------

□ 근거

- ◆ 2022년 유·초·중·고·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중등교육과-3858(2022.2.11.)]

□ 이행 계획

- ◆ 학교 현장에서 적기에 기간제교사(시간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단 홈페이지에 ‘기간제교사 인력풀’ 상시 운영 (<https://www.ice.go.kr/sub/info.do?m=010301&s=edusupport>)
- ◆ 인력풀을 통해 기간제교사(시간강사) 채용 시 채용서류 일체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감소 도모

□ 참고 사항

- ◆ 2022년 유·초·중·고·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17p

참고사항 **인력풀을 통한 채용 절차**

기간제교사 인력풀 제도는 기간제교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 절차를 거쳐 시스템에 등재하면 학교에서 기간제교원 필요 시 등재된 인력풀 내에서 별도의 채용 공고를 거치지 않고 원활히 채용 가능하도록 인력 DB를 관리·운영하여 지원하는 제도

주요 내용	추진 내용	주체
채용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 - 채용 방식(공고, 인력풀), 자격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심사 방법 등 	해당 기관장(부서장)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생략: 인력풀을 활용한 채용 - 채용공고 소요 기간 5일 단축 -	인력풀활용 (학교지원단)
1차 채용 심사	1차 서류심사 생략 - 채용업무경감 효과 -	인력풀활용 (학교지원단)
2차 채용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인력풀에서 조회·선정 - 채용시스템에 기간제교원 경력사항 등 확인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면접, 수업실연 등) 후 1순위 선정 	해당 기관 심사위원회
최종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용: 결격 사유 유무 확인 후 임용 -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실시 	해당 기관장(부서장)

제25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⑧ 학교장은 부득이 해당학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적정액의 보결 수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4 4208-403
------	------------------------------	-----	----------------------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 각급 학교 보결수업 규정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시간당 15,000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 보결수업 규정에 따라 보결수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
- ◆ 학교예산에 편성된 경비는 단위학교 자체 내규에 의하여 보결 수업을 담당한 교원에게 지급 가능
- ◆ 경비 지급과 관련된 보결 수업 방침, 보결 수업 배정 방법, 경비 지급 기준 등의 내용은 단위학교 자체 규정으로 정하되 교사 간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

제25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⑨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업무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소관부서	정보지원과(정보시스템팀)	연락처	4207-611
------	---------------	-----	----------

□ 근거

-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 ◆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이행 계획

- ◆ 나이스(교무업무시스템)에 대한 전화상담, 온라인 질의응답 및 기능개선 게시판 운영, 정기적인 업무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하여 현장에 대한 소통과 지원 강화
-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편(2023. 6월 개통 예정)을 통하여 현장 맞춤형 기능 제공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 상·하반기 연 2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현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인프라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제25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⑩ 교육청은 학급 내 위기학생 발생 시 관리자가 협력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학교생활교육과(학생성장지원팀)	연락처	4208-494
------	------------------	-----	----------

□ 근거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8조

□ 이행 계획

- ◆ 학급 내 위기 학생 발생 시 관리자가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위기학생 대응 역량 강화 내용 안내 시 내용 첨부
- ◆ 위기학생 발생 시 관리자의 협력 방안을 매뉴얼화하고, 관리자 연수 시 그 내용을 안내

제25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⑪ 교육청은 필요한 문서만 발송하도록 ‘문서통제관’을 지정하여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학교설립과(조직관리팀)	연락처	4206-544
------	--------------	-----	----------

□ 근거

- ◆ 2022년 공문서 감축 계획 알림(학교설립과-1813, 2022.03.02.)
- ◆ 2022. 3. 1.자 공문서 유통관리관 지정 알림(학교설립과-1919, 2022.03.04.)

□ 이행 계획

- ◆ 「2022년 공문서 감축 계획」 과 본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필요한 기관에만 공문이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통제관(유통관리관)을 지정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

제25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⑫ 교육청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의 제목 앞에 ‘제출’, ‘참석’ 등의 공문서 성격을 표시하는 ‘공문서 성격표시제’ 를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학교지원단(학교행정지원과)	연락처	453-1641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정책기획조정관-3714(2022.2.28.)]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이미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 공문으로 안내하였음
- ◆ ‘공문서 성격표시제’ 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 (이행완료) 2022년 공문서 감축 계획 알림(학교설립과-1813, 2022.3.2.)

제25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⑬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관리시스템과 ice-talk 메시지를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정보지원과(정보기획팀)	연락처	4207-605

□ 이행 계획

- ◆ 현재 ice-talk v1.0에서 v2.0으로 개편하여 사용 지원 중이며, 헬프데스크를 통해 사용자의 의견과 개선사항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음

제25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⑭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특근매식비가 교사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예산팀) 학교지원단(학교행정지원과)	연락처	4208-286 453-1641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정책기획조정관-3714(2022.2.28.)]
-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이행 계획

- ◆ 2023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반영하겠음
-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4, 9, 15p) 명시

☞ 단위학교에서 예산 편성·심의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 편성

제26조 【근로 및 휴게 시간】

① 교육청은 교사의 초과근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4208-375
----------------	------------------------------	-----	----------------------

□ 근거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이행 계획

- ◆ 관련 법령에 따라 초과근무가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

제26조 【근로 및 휴게 시간】

② 교육청은 교사의 자기 연찬 기회 확대를 위해 유,초,중,고등,특수,각종,기타 학교에서 교사의 방학 중, 재량휴업일, 기타휴업일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

③ 교육청은 방학과 재량휴업일에 돌봄교실이나 도서관, 방과후 수업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근무를 명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학생교육활동 관련하여 근무가 필요한 경우 학교 구성원의 토론과 투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하여 운영 사항을 결정한다.

소관부서	학교지원단(학교행정지원과)	연락처	453-1641
------	----------------	-----	----------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정책기획조정관-3714(2022.2.28.)]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이미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 공문으로 안내하였음
- ◆ 미이행 시 해당 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 ◆ 방학 중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서를 최대한 감축

제26조 【근로 및 휴게 시간】

④ 교육청은 휴직자 또는 신규임용예정교사의 의사에 따라 새학년 준비 목적의 의무 출근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4208-375

□ 근거

-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5조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이행 계획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 신규임용 예정교사가 새학년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출근할 경우, 현 소속 근무지에서 출장을 명하거나, 신규 발령받은 근무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

제27조 【생활기록부 업무 간소화】

교육청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성적(교과학습 발달 등), 종합의견 외에 진로 희망 사항, 독서기록, 방과 후 활동, 자격증 인증,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기록항목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지침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연락처	4208-366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4208-421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및 시행규칙 제21조 ~ 제25조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93호)
- ◆ 2022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 2022 인천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27조

□ 이행 계획

<초등교육과>

- ◆ 학교생활기록부 미입력, 선택입력사항 등 기록 항목 최소화 사항 지속적 안내
- ◆ 행동특성 및 창의적체험활동 등의 누가 기록의 방법은 교사 자율적으로 작성·활용하도록 학업성적지침에 반영하고 지속적 안내

<중등교육과>

- ◆ 교육부 업무 부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한 의견 제시
- ◆ 교육부 주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시 현장의견 수렴 후 제시
- ◆ 학교생활기록부 연수 시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의 관련 내용 안내

제28조 【직위에 따른 구분】			
교육청은 직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초등교육과정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4208-379, 363 4208-245, 395

□ 근거

- ◆ 유아교육법 제13조 1항
-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항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인천광역시 초, 중, 고 교육과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57호, 제2022-65호, 제2022-66호)

제29조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청은 일부 과밀 학급의 학습여건 개선과 함께 대규모 학교의 학습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학교설립과(학생배치팀)	연락처	4206-523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52조(학생배치계획)

□ 이행 계획

- ◆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하여 지속 노력
 - * 2021. 7.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의거 학급당 학생수 기준 28명 미만 (‘22.’ 24.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신·증축 집중적으로 추진)
- ◆ 2022학년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23.3명으로 학생수 감소, 학교신설로 지속 감소 추진(2028년 학급당 평균 20.0명 이하 감소 예상)
- ◆ 학교군 조정 및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 연구를 통한 과밀해소 방안 마련
 - 2022년 중·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및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추진
- ◆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적정 배치계획 수립
- ◆ 적기 학교신설로 학급당 적정 학생수 배치
 - 송도, 검단, 영종 등 신도시 지역 학교신설 추진
- ◆ 교육지원청 중학교 배정 담당 부서의 협조 요청(학급 편성 기준 준수)

제30조 【교수 · 학습과정】			
① 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 를 구성할 때 교사노조에서 추천한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유아교육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4208-362, 378 4208-245, 395

□ 근거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인천광역시 중, 고 교육과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2-65호, 제2022-66호)
- ◆ 인천광역시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제2조(심의회 조직), 제6조(위원)
- ◆ 인천광역시교육과정심의회 구성·운영 계획[중등교육과-38292(2021.11.29.)]

□ 이행 계획

<초등교육과>

- ◆ 교육과정 연수 및 장학자료 개발 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 (기 안내: 초등교육과-594(2022.1.7.))

<중등교육과>

- ◆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구성 시 교사노조도 포함한 공개적인 추천을 통해 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안내
- ◆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학교에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

제30조 【교수 · 학습과정】			
③ 교육청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 간 교원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수전공,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406

□ 근거

-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1, 2항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 이행 계획

- ◆ 복수전공, 부전공 자격연수 운영 계획 학교 안내 및 대상자 추천을 통한 연수 기회 제공

제30조 【교수·학습과정】			
④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연락처	4208-366

□ 근거

- ◆ 2022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 ◆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7조

□ 이행 계획

- ◆ 과정 중심 평가 모델개발사업 운영을 통한 과정 중심 평가 모델 사례 공유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연계 인천형 과정 중심 평가 연수 운영

제30조 【교수·학습과정】			
⑤ 교육청은 문예체 분야의 협력 수업 지원 사업을 지속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체육건강교육과(체육교육팀)	연락처	4208-395 4208-440

□ 근거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2005.12.19.개정/2017.3.21. 일부개정, 법률 제14630호)
- ◆ 학교체육진흥법(시행 2017.10.19. 법률 제14763호, 2017.4.18. 일부개정)
- ◆ 2022 인천학교예술교육 추진계획

□ 이행 계획

<중등교육과>

- ◆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학생예술동아리, 1학생 1예술교육 운영비, 1교 1예술동아리, 예술중점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비에서 예술강사수당을 편성하여 협력수업 할 수 있도록 안내
-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강사 지원 희망교에 예술강사를 매칭하여 교사와 협력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육건강교육과>

- ◆ 초등스포츠강사
 - 지원기간: 2022년 1월~12월
 - 지원대상: 초등학교 42교
 - 지원교과: (교육과정 내) 체육수업 보조
- ◆ 스포츠전문가와 함께하는 신나는 농구교실
 - 지원기간: 2022년 5월~12월
 - 지원대상: 초등학교 30교
 - 지원교과: (교육과정 내) 체육수업 보조

-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 지원기간: 2022년 30주간
 -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06교
 - 지원교과: (교육과정 외) 1교 1스포츠 강사 지원

제30조 【교수·학습과정】

⑥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교사 고유의 교수학습권과 평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초등교육과정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4208-379, 366 4208-249, 421
-------------	---	------------	--------------------------------

□ 근거

- ◆ 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제21조(교직원의 임무)
-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제2항, 제10조(교육부고시 제2023-4호)
- ◆ 2022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5조(학교생활기록)
-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 2022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제2조제4항, 제7조제3항
- ◆ 인천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7조
- ◆ 인천광역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 이행 계획

<초등교육과>

- ◆ 유치원 교사 생활기록부 작성 연수시 안내(홍보)
- ◆ 교사의 평가권과 관련된 내용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반영, 전 기관에 안내(홍보)하여 교사의 평가권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
- ◆ 교사의 교육과정-평가 자율성 확대
 - 성취기준에 기반한 과정 중심 수행평가 활성화

<중등교육과>

- ◆ 중학교 자유학기 교사별 평가 근거 마련 및 시행(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12조)
- ◆ 교육과정-수업-평가 관련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운영
- ◆ 성취평가제 확대 적용에 따른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 연수 운영
- ◆ 교사의 교육과정-평가 자율성 확대
 - 성취기준에 기반한 과정 중심 수행평가 활성화

제31조 【민주적인 학교운영】

① 교육청은 교직원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무회의 및 각종 협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미래학교혁신과(미래학교혁신팀)	연락처	4208-232
-------------	------------------	------------	----------

□ 근거

- ◆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 ◆ 학교혁신 추진 기본 계획

□ 이행 계획

- ◆ 공감과 소통의 교육공동체 회의 운영을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바탕으로 전체 교직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 교내 각종 현안에 대해 토론, 투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바탕으로 전체 교직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 민주적 공동체를 지원하는 토론 지원 및 촉진 자료집을 개발·보급함

제31조 【민주적인 학교운영】

②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 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마을교육지원단(학부모교육지원팀)	연락처	4208-178
------	-------------------	-----	----------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의2, 동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 ◆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19조의6,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2조의13

□ 이행 계획

- ◆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안내 예정
- ◆ 학교운영위원·학교(유치원)관계자 연수,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제32조 【교구 및 교과서 선정】

교구 및 교과서 선정은 교과 협의회 추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4208-396, 254
------	----------------	-----	---------------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 ◆ 중학교 교구 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0-208호)
- ◆ 고등학교 교구 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0-209호)

□ 이행 계획

- ◆ 교과서 선정 시 교과협의회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

- ◆ 단위학교 내 『교구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안내

제33조 【방과 후 활동】			
①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교사가 실시하도록 하며,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형태의 교과 보충수업, 선행교육 및 성적에 따른 일부 학생에 대한 예산지원 등 비교육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학생복지팀)	연락처	4208-339

□ 근거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 이행 계획

- ◆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공교육 정상화 취지를 고려하여 운영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 참여 금지
- ◆ 운영실태 확인 및 환류
 - 연수 및 협의회, 공문을 통한 안내 및 확인
 -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운영 점검

제33조 【방과 후 활동】			
② 교육청은 초·중학교의 경우 경시대회와 특목고 진학을 목적으로 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 및 경시대회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학생복지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진로진학팀)	연락처	4208-339 4208-249, 417

□ 근거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등
- ◆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 이행 계획

<정책기획조정관>

- ◆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됨
 -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 금지
- ◆ 운영실태 확인 및 환류
 - 연수 및 협의회, 공문을 통한 안내 및 확인
 -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운영 점검

<중등교육과>

- ◆ 2022년 선행교육 근절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안내
- ◆ 선행교육 금지 및 선행학습 유발 예방을 위한 점검 지속 추진
- ◆ 입학전형(특목고, 자사고 등)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 실시

제33조 【방과 후 활동】

③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학생복지팀)	연락처	4208-339
------	----------------	-----	----------

□ 근거

- ◆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 이행 계획

- ◆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업무경감 방안 마련
 -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업무 관련 각종 서식 포함 안내
 - 기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 활성화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경감 방안 마련
 - 연수 및 협의회 등을 통한 방과후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교육부 및 타시도 교육청과의 소통을 통한 업무경감 방안 협의

제33조 【방과 후 활동】

④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부재 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한다. 부득이하게 교사가 대체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학생복지팀)	연락처	4208-295
------	----------------	-----	----------

□ 근거

-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정책기획조정관-620, 2022.1.13.)
-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이행 계획

- ◆ 초등돌봄전담사 부재 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 · 운영하며, 부득이 교사가 대체 근무 시에는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

제33조 【방과 후 활동】

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유치원돌봄 포함)의 마을 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하여 학생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 특수교육팀) 정책기획조정관(학생복지팀)	연락처	4208-381,385 4208-295, 339
------	--	-----	-------------------------------

□ 근거

- ◆ 2020~2022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 2022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 ◆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 [교육부 국정과제] (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정책기획조정관-620, 2022.1.13.)

□ 이행 계획

<초등교육과, 정책기획조정관>

- ◆ 2022년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이미 반영됨
 - 지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및 미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교육기관 및 단체 운영 프로그램 확대
- ◆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 현재 마을돌봄 시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아동으로 유아 이용이 불가함
 - 유치원 돌봄 마을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 등과 지속 노력
-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방과후 과정 확대 운영
-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연계 지원 활성화 (만 6세 이상의 발달장애학생이 지역 내 다양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 지역사회 장애인 종합 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방과후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확대
- ◆ 교육청-지자체간 협력 강화하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학교밖 돌봄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부모에게 안내

제33조 【방과 후 활동】

⑥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업무경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초·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행정업무로 인해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학생복지팀)	연락처	4208-295, 339
------	----------------	-----	---------------

□ 근거

- ◆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 ◆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정책기획조정관-620, 2022.1.13.)
-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안내(정책기획조정관-2203, 2022.2.9.)

□ 이행 계획

- ◆ 방과후학교 보직교사제 조직 및 운영 안내
 - 초등학교 36학급이상, 중·고등학교 18학급 이상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보직교사 임명 활용
- ◆ 학교 실정 및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방과후학교 전담부서(팀) 구성 및 운영

- ◆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별도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중
 - 초등돌봄교실 1실당 1명 인력 배치,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제33조 【방과 후 활동】

⑦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의 원격 수업 시,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지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65, 379
------	-----------------------	-----	---------------

□ 근거

-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 이행 계획

- ◆ 초등학교 원격수업지원교실 등의 운영을 위한 ‘원격학습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함 (2022 예산 신청 희망교(초173교), 총860,000천원 지원)
- ◆ 공립유치원 원격수업 시 돌봄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원격수업 지원 인력을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 가능함을 안내하고, 원격수업 시 원격수업 지원인력을 활용하도록 권장
- ◆ 공립유치원 원격수업 관련 공문 시행 시 반영

제34조 【자율학습 등】

① 교육청은 자율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경비를 징수하거나 불법 모금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차인권교육팀)	연락처	4208-262
------	----------------------	-----	----------

□ 근거

- ◆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
- ◆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이행 계획

- ◆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전 기관 안내
- ◆ 교육청 소속 인권보호관을 통한 학습 선택권 보장 및 구제활동 지원

제34조 【자율학습 등】

② 교육청은 중·고등학교의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초과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소관부서	교육재정과(경리팀)	연락처	4206-584
------	------------	-----	----------

□ 근거

-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이행 계획

- ◆ 급여 유의사항 안내(규정 등에 의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

제35조 【감사제도】			
① 교육청은 학교 감사 시 교원의 교무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는 가급적 교육 전문직이 담당하도록 하고, 학교자율종합감사를 확대·운영한다.			
소관부서	감사관(감사1팀)	연락처	4208-151

□ 근거

- ◆ 2022년 자체감사 계획
- ◆ 2022년 학교감사실시 세부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 ◆ 2022년 학교 자율감사 실시 계획, 2022년 제13기 감사인력풀 구성 및 운영계획

□ 이행 계획

- ◆ 학교 감사반 구성 시 교무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는 교육전문직이 담당하도록 업무 분장하여 실시하고 있음
- ◆ 2022. 3. 1. 감사관실 교육전문직 1명 추가 배치
- ◆ 학사분야 교육전문직 감사인력풀 구성 74명
- ◆ 2022년 종합감사 대상교 118교 중 77교(65%) 학교 자율감사 실시 예정

제35조 【감사제도】			
② 교육청은 감사결과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고 공통지적 사항 사례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안내한다.			
소관부서	감사관(감사1팀)	연락처	4208-152

□ 근거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제25조

□ 이행 계획

- ◆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재심의 신청 기간 경과 또는 재심의 처리가 완료된 후)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 이전 사례집은 기존 안내 공문 및 공문게시판 참조, 향후 제작 예정 사례집은 홈페이지 탑재와 공문게시 병행 안내 예정
 - (공문)2020년도 감사사례(감사관-6632, 2020. 7. 16.)
 - (공문게시판)2021년도 감사사례(감사관-2186, 2021. 3. 9.)

제35조 【감사제도】

③ 교육청은 특별감사 시 당해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에 인천교사노조가 감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감사관(감사1팀)	연락처	4208-151
------	-----------	-----	----------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제27조
- ◆ 2022년 자체감사 계획, 2022년 시민감사관 운영 계획

□ 이행 계획

- ◆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과정에 참관 또는 참여하게 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 ◆ 특별감사 시 당해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에 감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노력

제36조 【교육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합리화】

① 교육청은 학교예산 편성 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예산 및 결산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공개 방법으로 교직원, 학부모에게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예산팀)	연락처	4208-286
------	--------------	-----	----------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4, 9, 15, 40p) 명시
- ☞ 단위학교에서 예산 편성·심의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 편성, 학교회계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
- ◆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시 교직원, 학부모에게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공개하도록 해당 문구 삽입 예정
- ☞ 학교장은 예산서는 예산 확정일부터 10일 이내, 결산서는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공개
-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일부개정 알림(정책기획조정관-7966, 2022.5.24.)

제37조 【학부모 부담 교육비 경감】

교육청은 교복, 체육복구매, 졸업앨범 제작,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학부모부담경비 사업에 있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학교생활교육과(회복적생활교육팀) 안전총괄과(안전체험관운영팀)	연락처	4208-488 7709-868
------	--------------------------------------	-----	----------------------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조례 제4조의2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

□ 이행 계획

<학교생활교육과>

- ◆ 「2022년 교복구매 운영요령」 안내(5월 예정)를 통해 교복구매계획을 학교 운영 위원회에 심의(필수)하도록 안내하고, 교복 낙찰 가격이 1인당 지원금(300천원)을 초과할 경우 수익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되 가급적 학교회계로 지원할 것을 권장하도록 안내
- ◆ 조달청 추천 앨범협동조합 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안전총괄과>

- ◆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매뉴얼 및 공문 발송 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권장한다.

제38조 【학급운영비】

① 교육청은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급운영비는 연간 학급당 3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개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학급운영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집행토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예산팀)	연락처	4208-286
------	--------------	-----	----------

□ 근거

-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4, 15, 24p) 명시
- ☞ 학생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기본적 교육활동비 우선 확보, 학급운영비(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간 급당 최소 30만원 이상 책정하고, 이를 개산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

제39조 【사립학교 지도·감독】

①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사의 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고시팀)	연락처	4208-426
------	------------	-----	----------

□ 근거

-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이행 계획

- ◆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규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법(법 제54조의4)에 해당하는 사유(1.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 피한 때 2.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 불가한 때 3.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도록 지도
- ◆ 관련 내용을 학교법인(소속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하여 행정지도
- ◆ 사립학교법에 의거 계약제교원 임용사항을 관할청에 보고 시 관계 법규 준수 여부 확인

제39조 【사립학교 지도·감독】

② 교육청은 사립학교 정규 교원 비율이 가급적 공립학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도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고시팀)	연락처	4208-426
------	------------	-----	----------

□ 근거

-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 초등교육과-31927(2021.12.23., 사립중등학교 교원 정원 배정 알림)

□ 이행 계획

- ◆ 관련 내용에 대한 공문 시행 및 사립학교 교원인사업무 컨설팅 시 안내 및 지도
- ◆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규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규교사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제교원을 임용하도록 지도

제39조 【사립학교 지도·감독】

③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공립과 동등한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예산팀)	연락처	4208-282
------	--------------	-----	----------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 ◆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및 집행 지침

□ 이행 계획

- ◆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등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시 공립학교와 동등한 기준 적용

제39조 【사립학교 지도·감독】			
④ 교육청은 사립학교 내에서 부당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고시팀)	연락처	4208-426

□ 근거

-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이행 계획

- ◆ 사립학교 교원 선발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을 임용할 경우, 「사립학교법」제53조의2,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1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선발
- ◆ 학교법인 내 교원 전보인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립교원 인사 관련 지도·점검 시 행정 지도

제40조 【학교평가 개선】			
① 교육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 평가를 실시한다.			
② 학교평가 결과는 학교 운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자료로 활용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정책기획팀)	연락처	4208-195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제13조

□ 이행 계획

- ◆ 학교평가는 2014학년도부터 외부평가단에 의한 현장평가를 폐지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참여·소통·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체평가 방식으로 실시함
- ◆ 학교평가 결과는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단위학교 교육개선 환류 자료로 활용하도록 교육청 보고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지 않음
- ◆ 당해 연도 학교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결과보고회 등 공유토론 과정을 거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개선에 반영

제4장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제41조 【공립유치원 확대】

①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교원 정원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370
------	--------------	-----	----------

□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이행 계획

- ◆ 인천의 특수성 및 지역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유치원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정원 증원 요구 중임

제41조 【공립유치원 확대】

② 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원아수용 여건 충족 시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을 설치한다.

③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혼합학급 포함) 유아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한다.

④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원아수를 각 향과 같이 감축하도록 추진한다.

1. 만5세 학급은 26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만4세 학급과 만 4,5세 혼합학급은 22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만3세 학급은 16명 이하로, 만 3,4,5세 혼합학급은 20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소관부서	학교설립과(설립기획팀)	연락처	4206-554
------	--------------	-----	----------

□ 근거

- ◆ 유아교육법 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교육부)
- ◆ 교육감 공약사항, 공약추진계획 등

□ 이행 계획

- ◆ 병설유치원 신·증설
 - 초등학교 전환가능교실 활용 및 개발지역 신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
 - 기존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가능 여부 검토
- ◆ 단설유치원 신·증설
 - 초·중·고 교지 내, 학교이적지, 미개설 학교용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용지 등 활용
- ◆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학급당 유아수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제42조 【공립유치원 정책 마련 및 의견 수렴】

- ① 교육청은 인천광역시유아교육위원회에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② 교육청은 인천미래유아교육협의회에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78, 380
------	--------------	-----	---------------

□ 근거

- ◆ 유아교육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 2022 인천미래유아교육협의회 운영 계획(2022. 4.)
- ◆ 2022 인천미래유아교육협의회 구성 및 위촉(2022. 4)

□ 이행 계획

- ◆ 현 인천광역시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후 외부위원 구성 비율에 따라 참여 안내
- ◆ 인천미래유아교육협의회에 인천교사노조 교사 참여를 보장

제43조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

- ① 교육청은 조직개편 시 유.초등교육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도록 노력하고 유아교육 관련 부서 인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학교설립과(조직관리팀)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6-543 4208-378
------	------------------------------	-----	----------------------

□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이행 계획

<학교설립과>

- ◆ 조직개편 시 유초등교육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
- ◆ 유아교육 관련 부서의 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초등교육과>

- ◆ 교육부 및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지속 노력
- ◆ 지방공무원 기능별 정원 증감원 요구서 제출
- ◆ 교육부 국가정책수요 재배정 사업 정원유지 요구서 제출

제43조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

② 교육청은 유아교육 전문직(장학관, 장학사)이 적정 인원 선발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78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4208-403

□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이행 계획

- ◆ 초등·중등 등 타 학교급 교육전문직원 현황과 연계하여 유치원교사 교육전문직원 정원 확대(안) 검토
- ◆ 유치원교사 교육전문직원 배치에 대한 유치원 현장 및 교육지원청의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 유아팀에서 교육부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국가수요 또는 지역현안)

제43조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

③ 교육청은 유치원 (겸임)관리자의 누리과정 이해 증진과 민주적인 유치원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유치원 (겸임)관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④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전문직의 현장 이해 증진과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여 실시한다.

소관부서	인천유아교육진흥원(기획운영과)	연락처	4589-363
------	------------------	-----	----------

□ 근거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37조(유아교육진흥원 업무)

□ 이행 계획

- ◆ 누리과정 이해 증진 및 민주적인 유치원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공립유치원 관리자 연수 실시(기획운영과-1397,2022.6.28.)
- ◆ 유아교육 전문직원의 현장이해 증진 및 민주적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예정 (기획운영과-1102,2022.5.10.)
- ◆ 누리과정 이해 증진 및 민주적인 유치원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공립유치원 관리자 연수를 연 1회 이상 지속적 실시
- ◆ 각종 관리자 연수 시 누리과정 이해 증진과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 반영
- ◆ 유아교육 전문직원의 현장이해 증진 및 민주적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연 1회 이상 지속적 실시
- ◆ 각종 유아교육 전문직원 연수 시 현장 이해 증진과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관련 내용을 반영

제43조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

⑤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공립유치원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79
------	--------------	-----	----------

□ 근거

- ◆ 2022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초등교육과-3423(2022.2.10.)]

□ 이행 계획

- ◆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국가수준 교육과정(누리과정) 범위 내에서 공립유치원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제43조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

⑥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누리과정에 명시된 운영시간(1일 4~5시간)을 융통성있게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79
------	--------------	-----	----------

□ 근거

- ◆ 유치원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

□ 이행 계획

-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며 교육부 고시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라 1일 4~5시간 기준으로 편성함을 안내

제43조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

⑦ 교육청은 공립유치원교사의 근무시간을 보장하며, 출근 시간 이전 및 퇴근 시간 이후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375
------	--------------	-----	----------

□ 근거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2장

제43조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

⑧ 유치원장은 교육과정 보결수업이 필요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공립유치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보결수업비를 지급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374
------	--------------	-----	----------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 각급학교 보결수업 규정

□ 이행 계획

- ◆ 시간당 15,000원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보결수업 규정에 따라 보결수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
- ◆ 교육(지원)청 연수 및 교육(지원)청 주관 협의회, 관리자 자율장학협의회, 유아교육 전문직원 연수 및 협의회 등을 통해 안내

제43조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

⑨ 교육청은 신체활동, 바깥놀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피복비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지원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78
------	--------------	-----	----------

□ 근거

- ◆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 ◆ 유치원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 이행 계획

- ◆ 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공립유치원 교사에게 피복비 지급 가능
 - 이미 피복비 지급(구입)한 유치원 있음
- ◆ 피복비 지급 가능한 예시에 공립유치원 교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팀 협의

제43조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

⑩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서 미세먼지 및 기상악화로 인해 바깥놀이를 하지 못할 경우, 대근육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희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교육시설과(시설팀)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7-666 4208-378
----------------	----------------------------	-----	----------------------

□ 이행계획

<교육시설과>

- ◆ 공립유치원 설계 시 유희실을 반영하여 설계 및 공사하고 있음

<초등교육과>

- ◆ 유희실 및 실내 대근육활동 공간이 없는 공립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유희교실이 생길 시 유치원 유희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안내

제43조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

⑪ 교육청은 감염병 등으로 인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립유치원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고 노트북을 지급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정보지원과(행정정보운영팀)	연락처	3200-095 4207-622
------	--------------------------------	-----	----------------------

□ 근거

-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 ◆ 2021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교육콘텐츠 개발지원 계획(교육부, 2021. 1.)
- ◆ 2021 2학기 유치원 등원수업 및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안내(교육부, 2021. 7.)
- ◆ 인천교육회복 종합방안 알림[정책기획조정관-8043(2021.8.)]

□ 이행 계획

<정보지원과>

- ◆ 2021년 학교 무선환경 구축 사업 시 공립유치원 교실에 무선인터넷 설치 완료함
- ◆ 2022년, 2023년 신설 공립유치원 무선인터넷 설치 완료(병설4, 단설3)

<초등교육과>

- ◆ 공립유치원 학급 현황('22.4.1.)을 기준으로 2021년 기지원(336대)을 제외한 노트북 구입비 추가 지원 예정

제43조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

⑫ 교육청은 유치원 원내 체험학습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 따라 누리과정 내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79
------	--------------	-----	----------

□ 근거

- ◆ 유치원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 ◆ 2022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초등교육과-3423(2022.2.10.)]

□ 이행 계획

- ◆ 유치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누리과정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하되, 학급특성, 유아 발달 특성 및 경험 수준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이고 융통성있게 편성·운영하도록 안내함
-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원내 체험학습 등 관련 공문 시행 시 반영

제43조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

⑬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중식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80
------	--------------	-----	----------

□ 근거

- ◆ 2021 예결위(계수조정) 공립유치원 교육특화사업지원(2021. 12. 14.)

□ 이행 계획

- ◆ 공립유치원 방학 중 중식 제공 방안 마련 시 교원 의견수렴, 협의회 등을 실시한다.

제44조 【공립유치원 업무 정상화】			
①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내 의견 수렴 및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78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정책기획조정관-2998(2022.2.17.)]

□ 이행 계획

- ◆ 교육(지원)청 주관 협의회 및 관리자 자율장학협의회 시 지속적으로 안내

제44조 【공립유치원 업무 정상화】			
②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제출 공문 중 동일한 사항에 한해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통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학교지원단(학교행정지원과)	연락처	453-1641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정책기획조정관-3714(2022.2.28.)]

□ 이행 계획

- ◆ 2023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반영하겠음. 단체협약 체결내용을 전 기관 안내하여 신속한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

제44조 【공립유치원 업무 정상화】			
③ 교육청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자료집계를 요구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공휴일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④ 교육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외에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지양하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학교지원단(학교행정지원과)	연락처	453-1641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정책기획조정관-3714(2022.2.28.)]
- ◆ 2021년 갑질근절 및 예방 세부 추진계획
-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이미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 공문으로 안내 하였음
- ◆ 교장(원장), 교감(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기타 교직원 대상으로 한 인천교육정책 연수 (설명회) 시, 해당 내용 안내 (단, 비상상황일 경우 해당 내용 예외 적용)

제44조 【공립유치원 업무 정상화】

⑤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및 학급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79
------	--------------	-----	----------

□ 근거

-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 이행 계획

- ◆ 유치원 교육실무사 근무 시간 변경에 따라 민주적인 협의를 통한 업무 분장으로 교육활동 및 행정업무 지원
- ◆ 유치원 교육실무사의 행정업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 공립유치원 교사 행정업무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제44조 【공립유치원 업무 정상화】

⑥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과후 과정 업무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⑦ 교육청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서 ‘방과후 과정 업무담당자’ 지정 문구를 삭제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의 업무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80
------	--------------	-----	----------

□ 근거

-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과제8. 유치원 업무 효율화)
- ◆ 2022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2022. 2.)

□ 이행 계획

- ◆ 학교업무정상화 추진단과의 간담회, 안전협의 등을 통해 방과후 과정 업무정상화 지속 추진
- ◆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서 ‘방과후 과정 담당자’ 지정 문구 삭제
- ◆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행정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유아교육진흥원)
- ◆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업무 실태조사 시 인천교사노조와 소통

제44조 【공립유치원 업무 정상화】

⑧ 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 강사의 부재 시, 대체인력을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부득이하게 유치원 교사가 담당할 경우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80
------	--------------	-----	----------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 각급 학교 보결 규정

□ 이행 계획

- ◆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부재 시, 대체인력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부득이하게 유치원 교사가 담당할 경우 유치원 보결 규정에 따라 적절한 수당 지급 안내

제44조 【공립유치원 업무 정상화】

⑨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종일제(보결전담) 강사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80
------	--------------	-----	----------

□ 근거

- ◆ 2022학년도 유치원 종일제(보결전담) 강사 운영 계획(2022. 2.)

□ 이행 계획

- ◆ 공립유치원 종일제(보결전담) 강사지원 사업 지속 추진 및 개선을 위해 노력

제44조 【공립유치원 업무 정상화】

⑩ 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법령에서 정한 복무·업무분장·근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79
------	--------------	-----	----------

□ 근거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2장

□ 이행 계획

- ◆ 법령에서 정한 복무·업무분장·근무시간을 유치원 교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내

제44조 【공립유치원 업무 정상화】

- ①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시 유치원 교사를 포함하여 협의한다.
- ②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육실무지원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시 유치원 교사를 포함하여 협의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4208-379,380
------	--------------	-----	--------------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과제6-1. 의견 개진 및 참여 활성화)

□ 이행 계획

- ◆ 방과후 과정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시 유치원 교사 포함 협의 예정
- ◆ 교육실무 지원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시 유치원 교사 포함 협의 예정

제45조 【특수교육 정상화】

- ① 교육청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실현성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의 급당인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에 노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4208-384
------	--------------	-----	----------

□ 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 이행 계획

- ◆ 매년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 조사를 통하여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있으며, 향후 법정 정원이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 2021년부터 과밀 특수학급의 신청을 받아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교사를 배정하고 있음

제45조 【특수교육 정상화】

- ②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에 따라 특수학교 및 각급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역할,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행동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를 운영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4208-384
------	--------------	-----	----------

□ 근거

- ◆ 202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부)
- ◆ 2022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운영 계안내

□ 이행 계획

- ◆ 2022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운영 안내 공문 게시(국립특수교육원-42/2022.1.18.)

- ◆ 2022년 특수교육실무사 연수 계획 시 반영 예정
- ◆ 특수교육실무사 및 장애학생 지원인력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 대상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

제45조 【특수교육 정상화】			
③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도전 행동으로 인한 교사의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과 관련한 교사 보호 조치 및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4208-384

□ 근거

- ◆ 교원지위법 제14조, 15조, 17조
- ◆ 202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이행 계획

- ◆ 2022년 교원 상담 및 치유지원을 위한 ‘교원 사랑돋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전 기관 대상으로 안내되었음 (동아시아시민교육과-2359 /2022.3.7.)
-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심리치유 지원 협약기관 연계 및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교원돋움터)

제45조 【특수교육 정상화】			
④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의 행동문제로 인해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4208-384

□ 근거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이행 계획

- ◆ 시행령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배상 받을 수 있음을 교육(지원)청 연수 및 교육(지원)청 주관 협의회, 관리자 자율장학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에 안내

제45조 【특수교육 정상화】			
⑤ 교육청은 특수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가급적 특수학급 업무 이외의 별도 업무를 부가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4208-384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 ◆ 관리자 연수, 공문 발송 시 안내하겠음

제45조 【특수교육 정상화】

⑥ 교육청은 특수교사에게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들봄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4208-384
------	--------------	-----	----------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 ◆ 관련 공문 발송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안내

제45조 【특수교육 정상화】

⑦ 교육청은 기관 소속의 특수교육 순회교사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4208-384
------	--------------	-----	----------

□ 근거

- ◆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 ◆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이행계획

- ◆ 유치원 특수학급 보결전담 강사를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4명)

제45조 【특수교육 정상화】

⑧ 교육청은 특수교육 관련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 등에서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강조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4208-384
------	--------------	-----	----------

□ 근거

- ◆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

□ 이행 계획

- ◆ 학부모 연수 및 통합교사 연수 시 내용에 반영 예정
- ◆ 특수교육 관련 교육(지원)청 연수 및 교육(지원)청 주관 협의회, 관리자 자율장학협의회 시 관련 내용을 현장에 안내

제45조 【특수교육 정상화】

⑨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공무직 및 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의무연수를 원격과 집합연수로 관리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4208-384
------	--------------	-----	----------

□ 근거

- ◆ 202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부)

□ 이행 계획

- ◆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장애인고용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공문 기 안내(초등교육과-9065,2022.3.29.)

제45조 【특수교육 정상화】

⑩ 교육청은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2018.12.19.)에 따라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및 상담사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4208-386
------	--------------	-----	----------

□ 근거

-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교육부, 2018.12.19.)

□ 이행 계획

- ◆ 특수교사 및 상담사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노력하겠음

제45조 【특수교육 정상화】

⑪ 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4208-386
------	--------------	-----	----------

□ 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제11조

□ 이행 계획

- ◆ 202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교사 연수비가 편성되어 지원할 예정
- ◆ 202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교사 동아리 운영비 편성 예정

제45조 【특수교육 정상화】

⑫ 교육청은 특수교육 업무 정상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급 처리 방식을 치료지원비 지급방식과 동일한 카드 결제 방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4208-389
------	--------------	-----	----------

□ 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 개인별 방과후교육활동 전자카드 도입 계획 수립 완료
- ◆ NH농협은행에서 사업 검토 및 심사 단계
-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급처리 방식을 카드 결제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이행 계획

- ◆ 개인별 방과후교육활동 전자카드 도입 계획 수립 완료
- ◆ NH농협은행에서 사업 검토 및 심사 단계
-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급처리 방식을 카드 결제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제45조 【특수교육 정상화】

⑬ 교육청은 특수교사에게 사회복지요원(특수)의 급여지급 업무가 부가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4208-384
------	--------------	-----	----------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반영됨
- ◆ 관련 공문 발송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안내
- ◆ 교육(지원)청 연수 및 교육(지원)청 주관 협의회, 관리자 자율장학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에 안내

제46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및 사서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①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서교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1학교 1사서교사 배치를 목표로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의 사서교사 정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미래학교혁신과(독서문화팀))	연락처	4208-370 4208-405 4208-495
----------------	--	-----	----------------------------------

□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이행 계획

- ◆ 1학교 1사서교사를 목표로 교육부에 사서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하며 정원 증원 요구 중임

- ◆ 매년 초 중등 교원 임용 시험 사전티오 고지 전 공무원사서 퇴직자 수를 조사하여 공무원사서 퇴직자 수 만큼 사서교사 신규 티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티오 산정 기초자료 제출 및 티오 배정 요청

제46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및 사서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③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및 효율적 컨설팅을 위해 학교 도서관 운영을 전담할 사서교사 교육 전문직을 선발·배치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미래학교혁신과(독서문화팀))	연락처	4208-403 4208-370 4208-495

□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 이행 계획

- ◆ 교육전문직원 정원 수급에 따라 사서교사 교육전문직원 배치(안) 검토
- ◆ 사서교사 교육전문직원 배치에 대한 학교 현장 및 교육지원청의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 영양, 보건 등 타 비교과 교육전문직원 현황과 연계하여 사서교사 교육전문직원 정원 확대(안) 검토

제46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및 사서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④ 교육청은 주말 방학중(휴무일 포함)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경우, 단위학교에서 이에 따른 필요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미래학교혁신과(독서문화팀)	연락처	4208-495

□ 근거

- ◆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교사노동조합 단체협약

□ 이행 계획

- ◆ 교육청은 방학 중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경우 단위학교에서 이에 따른 필요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
(이행완료: 미래학교혁신과-2458(2022.2.28.))

제46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및 사서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⑤ 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복무와 업무분장, 근무시간에서 다른 교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4208-375

□ 근거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2장

□ 이행 계획

- ◆ 사서교사가 복무와 업무분장, 근무시간에서 다른 교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단위 학교에 안내

제46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및 사서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⑥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 지원 역할과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독서 교육 및 독서생활지도를 위해 신설되는 통합학교(초등·중등)의 각 급간에 사서교사를 별도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불가능할 경우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소관부서	미래학교혁신과(독서문화팀)	연락처	4208-452
------	----------------	-----	----------

□ 근거

-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1조
- ◆ 2022 학부모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계획(미래학교혁신과-2864, 2022.3.8.)

□ 이행 계획

-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 및 전담인력 배치교 중 과대학교에 대하여 학부모 도서관 자원봉사자 공모사업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음
(이행완료: 미래학교혁신과-2864, 2022.3.8.)
- ◆ 통합학교(초등·중등)의 경우 과대학교가 아닌 경우에도 학부모 도서관 자원봉사자 공모사업으로 보조인력을 지원 계획임

제47조 【보건교육 및 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

①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체육건강교육과(학교보건팀))	연락처	4208-370 (4208-405) (4208-444)
----------------	--	-----	--------------------------------------

□ 근거

- ◆ 학교보건법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이행 계획

- ◆ 교육부에서 배정된 교사 정원 내에서 보건교사 정원을 배치하고 있음
- ◆ 보건교사 미배치교인 경우 보건 정원의 기간제를 채용하게 하고 있으며, 학교 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와 보건 정원의 기간제를 배정하여 2인이 근무하게 하고 있음

제47조 【보건교육 및 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

- ② 교육청은 환경위생관리 업무 중 시설과 관련된 업무가 보건교사에게 부여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렌탈 등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④ 교육청은 공기질 검사, 정수기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소관부서	체육건강교육과(학교보건팀)	연락처	4208-445
------	----------------	-----	----------

□ 근거

- ◆ 학교보건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이행 계획

- ◆ 환경위생관리 업무 중 시설과 관련된 업무는 보건교사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안내 하겠음
-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교보건팀(강화는 교육지원과 학생건강복지팀)에서 공기질 정기점검 및 정수기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있음

제48조 【장애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 ① 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의 처우 개선 및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계획, 전보 등 주요 정책수립 시 장애인교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원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410, 404 4208-371
----------------	--------------------------------	-----	---------------------------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 이행 계획

- ◆ 전보 및 정책수립 시에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48조 【장애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 ②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의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410
------	--------------	-----	----------

□ 근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이행 계획

- ◆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하여 공단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도입

- ◆ 기타 장애인 교원 관련 지원방안 검토

제48조 【장애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③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 인력의 원활한 직무 역할 수행을 위해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인력에 대한 연수 및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410

□ 이행 계획

- ◆ 장애교사 보조인력에게 의무 연수 관련 공문 안내 하겠음

제48조 【장애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④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발령 및 희망 근무지에 대한 의사를 반영하여 임용·전보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1 4208-404

□ 근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 이행 계획

- ◆ <초등교육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전보 우대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음
- ◆ <중등교육과> 정기 전보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는 우선 전보를 함

제49조 【학교 급식의 개선】			
① 교육청은 GMO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정책을 수립하여 학교급식에 건강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체육건강교육과(학교급식팀)	연락처	4208-306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 ◆ GMO 및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등 ‘학생 건강 환경’ 조성 [민선3기 교육감 공약사업]

□ 이행 계획

- ◆ 2022년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연 60건, 식재료 GMO 검사 연 30건 실시
→ 이행 완료

제49조 【학교 급식의 개선】

② 교육청은 급식시설 현대화(오븐기, 냉·난방 시스템 등)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체육건강교육과(학교급식팀)	연락처	4208-303
------	----------------	-----	----------

□ 근거

- ◆ 학교급식법 제6조, 제8조(경비부담 등) 등
- ◆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교육부 5차 개정, 2021)
- ◆ 2022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

□ 이행 계획

- ◆ 학교급식시설비 적극 지원 및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질 향상을 도모하고 수요자 급식만족도 제고 및 급식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음
-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노후 급식기구 및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신청교)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원대상교를 선정 후 예산 내에서 지원

제50조 【학기 중 미급식일 중식지원업무 및 무상우유지원 문제 해소】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행정력 낭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기 중 미급식일(현장체험학습일 등)의 중식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재량휴업일은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무상우유 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학생복지팀) 체육건강교육과(학교급식팀)	연락처	4208-296 5501-718
------	----------------------------------	-----	----------------------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내지 제60조의9, 제62조
-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법 제3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 보건복지부 「2022년도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

□ 이행 계획

<정책기획조정관>

- ◆ 각급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학기 중 미급식일 지원 방식 개선 추진
- ◆ 지자체에서 재량휴업일 지원

<체육건강교육과>

- ◆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우유 지원사업 운영방식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노력하겠음

제51조 【영양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과 올바른 영양관리 및 영양·식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교육청 예산 및 정원 내에서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1일 2식 실시 교
2. 통합학교(유·초·중·고)
3. 과밀학교(학생수 1300명 이상 교)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체육건강교육과(학교급식팀)	연락처	4208-370 4208-304
-------------	--------------------------------	------------	----------------------

□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이행 계획

<초등교육과>

- ◆ 현재 교육부에서 배정된 정원 내에서 영양교사를 정교사 배치하고 있으며, 정원 내에서 영양교사 추가 배치로 학교급식 운영 및 영양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체육건강교육과>

- ◆ 통합학교 및 과밀학교 2인 배치 완료
- ◆ 1일 2식 실시 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석식 운영교가 없으며, 석식 운영의 결정여부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인력배치의 어려움 있음
석식 운영 여부 확인 후, 배치 검토 예정

제52조 【고교학점제운영계획】

① 교육청은 기관 소속 고교학점제 교과전담순회교사를 운영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지원팀)	연락처	4208-260
-------------	-----------------	------------	----------

□ 근거

- ◆ 2022년 인천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

□ 이행 계획

- ◆ 교과전담순회교사 운영 시 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 적을 두고 채용 및 관리 업무 지원
- ◆ 인천 고교학점제 교과전담순회교사 12명, 24개 학교 지원하고 있으며, 23년 확대 예정

제52조 【고교학점제운영계획】

② 교육청은 학교에 고교학점제운영에 필요한 사항(각종 규정, 계획서, 과목 안내서 등)을 지원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지원팀, 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4208-260,248
-------------	------------------------------	------------	--------------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92조의3
- ◆ 2022년 인천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 이행 계획

- ◆ 고교학점제 연구준비(선도)학교 운영 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 하여 안내
- ◆ 인천 「고교학점제 미리보기(과목 안내서 포함)」 e-book, e-poster, PDF, 인쇄책자, 활용 안내 동영상 등을 개발·제작하여 공문 발송,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게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채널 등에 탑재완료 후 현재 지속적인 안내 및 활용 중임.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을 근거로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최소 성취수준의 성취율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제52조 【고교학점제운영계획】

- ③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 시 최소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학교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계획과 지원에 관하여 현장 교원 및 교직원단체의 의견 수렴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지원팀)	연락처	4208-260
------	-----------------	-----	----------

□ 근거

- ◆ 2022년 인천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

□ 이행 계획

- ◆ 인천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예산 중 최소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지원을 위한 책임교육실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안내 함
- ◆ 인천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현장 교원 및 교직원단체가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전 검토 시행 예정

제5장 교권

제53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①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히 침해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입법화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550-1781~2
-------------	-----------------------	------------	------------

□ 근거

-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8조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이행 계획

- ◆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안내
-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및 리플릿 제작·배포
- ◆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 고발
-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자를 말한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하여 관련 부처에 건의

제53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② 교육청은 교사단체가 추천하는 평교사를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단, 현재 교원위원 임기까지는 유예)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550-1781
-------------	-----------------------	------------	----------

□ 근거

-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2조
- ◆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이행 계획

- ◆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사단체가 추천하는 평교사를 교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함

제53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③ 교육청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사안(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안)발생 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천교사노조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550-1781~2
------	-----------------------	-----	------------

□ 근거

- ◆ 교원지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이행 계획

- ◆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조사 및 보고 관련 학교 안내
- ◆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해당 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천교사노조 의견 청취

제53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④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관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교육청에 접수되면 해당 학교를 관리·감독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550-1781~2
------	-----------------------	-----	------------

□ 근거

- ◆ 교원지위법 제16조

□ 이행 계획

- ◆ 학교관리자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한다는 신고가 교육청에 접수되면 해당 학교 관리·감독

제53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⑤ 교육청은 연 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를 보급하여 각급학교가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는 연 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550-1781~2
------	-----------------------	-----	------------

□ 근거

-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 이행 계획

- ◆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 제작·보급
- ◆ 각급 학교에서 실시한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결과 보고 공문 시행

- ◆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연수, 학교교권보호책임관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제53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⑥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수업방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거부를 행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학교는 교육구성원의 합의하에 징계 외 생활지도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			
소관부서	학교생활교육과(회복적생활교육팀)	연락처	4208-483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 ◆ 2022학년도 학교생활교육 계획 및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지침

□ 이행 계획

- ◆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지침 및 관련 양식을 안내
- ◆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제·개정하도록 안내
- ◆ 교권 보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업진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학교규칙(학칙)에 반영하도록 안내함

제53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⑦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대처 방안을 매뉴얼화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550-1781

□ 근거

- ◆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이행 계획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운영 관련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보급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내
- ◆ 학교교권보호책임관 및 학부모 위원 연수 운영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장학 지속 강화

제53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⑧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⑨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550-1733~4
------	-----------------------	-----	------------

□ 근거

-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8조
-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4조

□ 이행 계획

- ◆ 피해교원 보호 조치 관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안내
- ◆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치유를 위한 협약기관 연계 심리상담·치료 지원
- ◆ 교원돈움터의 역할과 활용 안내 방법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의 결과를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
- ◆ 교장 자격연수, 교감 자격연수, 내용에 관련 사항 반영
- ◆ 교육활동침해 사안 발생 직후부터 최종 처분 전까지 신속한 피해 교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분리 방안 마련 노력

제53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⑩ 교육청은 학교 내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접수된 사안의 종류와 경중을 고려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가 조사, 판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관부서	감사관(감사총괄팀)	연락처	4208-142
------	------------	-----	----------

□ 근거

- ◆ 2022년도 자체감사 계획
- ◆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이행 계획

- ◆ (완료)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갑질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 조사비 편성(10,000천원)
- ◆ 갑질 민원 사안이 복잡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필요 시 노무사 등 갑질 분야 전문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갑질 민원 조사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감사 결과에 대한 민원인과 피민원인의 수용도 제고
- ◆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법률·심리 상담 운영 지원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제53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⑪ 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노사협력과(노무지원팀)	연락처	4208-332
------	--------------	-----	----------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10조

□ 이행 계획

-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공정한 조사 및 피해자가 확인 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및 발령,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즉시 이행하겠음

제53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⑫ 교육청은 교사가 아동 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원장) 명의로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소관부서	학교생활교육과(회복적생활교육팀)	연락처	4208-488
------	-------------------	-----	----------

□ 근거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이행 계획

- ◆ 2022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요령 학교용 가이드북[학교생활교육과-3622 (2022.3.16.) 76쪽, 아동학대 신고 시 ‘학교 또는 학교장 명의로 신고 가능’ 표시하여 안내함
- ◆ 아동학대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

제53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⑬ 교육청은 상담활동 중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사의 심리적 피해 및 소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550-1733~4
------	-----------------------	-----	------------

□ 근거

- ◆ 교원지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4조

□ 이행 계획

- ◆ 피해교원 보호 조치 관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안내
- ◆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치유를 위한 협약기관 연계 심리상담·치료 지원
- ◆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적 소진을 다루는 활동 지원

제54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			
① 교육청은 교원의 각종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배상 책임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550-1785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계획
- 이행 계획
 -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관내 교원(강사, 기간제교원, 휴직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가입

제54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			
②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 및 치유비 지원은 학교장 또는 피해 교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550-1733~4

- 근거
 - ◆ 교원지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4조
- 이행 계획
 - ◆ 교원 사랑 돈음프로그램 운영 계획 안내
 - ◆ 피해교원 보호조치 관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안내

제54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			
③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소관부서	노사협력과(교직·공무원단체팀)	연락처	4208-324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이행 계획
 - ◆ 관련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54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			
④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안전기획팀)	연락처	4208-345

- 근거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이행 계획
 - ◆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 중 교사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때에는 해당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고 있음

제54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			
⑤ 교육청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녹취시스템을 이용한 통화 녹음을 지원하고 녹취 청취 및 다운로드 방안을 마련·안내한다.			
소관부서	정보지원과(정보기획팀)	연락처	4207-606

- 근거
 - ◆ 교원지위법 제14조
- 이행 계획
 - ◆ 교육청 메신저(ice-talk v2.0)의 부가서비스 녹취시스템을 통해 통화녹음을 지원하고 녹취파일 청취 및 다운로드 지원
 - ◆ 녹취방법 및 다운로드 방법 헬프데스크에 게시하여 상시 안내

제54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			
⑥ 교육청은 학교 민원 전화 시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자동응답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차인권교육팀) (정보지원과(정보기획팀))	연락처	4208-262 4207-606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이행 계획
 - ◆ 전 기관에 안내를 통하여 인권존중 안내 ⇒ 인권존중 문구를 원하는 학교에서 정보 지원과로 요청 시 대표전화 자동응답시스템에 문구 반영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전 기관 안내

제54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

⑦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48조와 『사립학교법』 제60조 및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현직 교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550-1781~2
------	-----------------------	-----	------------

□ 근거

- ◆ 교육공무원법 제48조, 사립학교법 제60조, 교원지위법 제4조
-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 이행 계획

- ◆ 관련 법 적용에 대한 학교 안내

제54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

⑧ 교육청은 학교에서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과정 강사에게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고 관련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학생복지팀)	연락처	4208-295, 339
------	----------------	-----	---------------

□ 근거

-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정책기획조정관-620, 2022.1.13.)

□ 이행 계획

- ◆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 ◆ 운영실태 확인 및 환류
 - 연수 및 협의회, 공문을 통한 안내 및 확인
 -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지도 점검
-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기본계획 및 길라잡이에 이미 반영됨
 - 학교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 계획 포함하여야 함
 - 돌봄교실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황별 처리 지침 안내됨
- ◆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단위학교별 교직원 대상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54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			
⑨ 교육청은 교원단체와 교권관련 협의회를 연 2회 이상 운영하며,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550-1781

□ 이행 계획

-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원단체와 교권 관련 협의회를 연 2회 이상 운영

제54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			
⑩ 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위원회에 인천교사노조에서 추천한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4208-262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이행 계획

- ◆ 인천교사노조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교육청인권증진위원회 위원 구성
- ◆ 위 위원들의 인천광역시교육청인권증진위원회 참여 보장

제54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			
⑪ 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피소를 당할 경우 민사·형사상 소송비용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요건에 따라 지원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550-1784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원배상 책임보험 운영 계획

□ 이행 계획

- ◆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중 교원의 담보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민사상 법률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방어비용 지원

제54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			
⑫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의 상담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550-1784

□ 근거

- ◆ 교원지위법 제14조의2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이행 계획

- ◆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공문 시행
- ◆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활용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연중 온오프라인 법률 상담 또는 자문 실시

제55조 【교사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보호】

-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 ④ 교육청은 온라인 상에서 교원의 동의 없이 사진 또는 동영상이 공유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지원한다.

소관부서	정보지원과(정보보호팀)	연락처	4207-632
------	--------------	-----	----------

□ 근거

-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이행 계획

- ◆ 각급 학교가 교원의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 개인정보 수집·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 및 교육청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에 관련 자료 탑재
- ◆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가정통신문이 발송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

제55조 【교사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보호】

-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전보 시에 포털기사 등으로 교사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보 내용이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1 4208-404
------	------------------------------	-----	----------------------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 이행 계획

- ◆ <초등교육과> 현재 교사 전보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하고 있음
- ◆ <중등교육과> 교사의 전보사항은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제공함

제55조 【교사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보호】			
③ 교육청은 졸업앨범에 해당 교원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올리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학교생활교육과(회복적생활교육팀)	연락처	4208-487

□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이행 계획

- ◆ 졸업앨범에 해당 교원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올리도록 안내·지도

제55조 【교사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보호】			
⑤ 교육청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관부서	정보지원과(정보기획팀)	연락처	4207-606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10조

□ 이행 계획

- ◆ 교육청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ice-talk v2.0)의 부가서비스인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원의 개인번호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 ◆ Ice-talk v2.0 모바일앱 사용자 매뉴얼(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 안내 및 사용방법 포함) 헬프데스크에 게시하여 상시안내

제56조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및 규제 등】			
① 교육청은 학교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1. 연 1회 이상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련 기관 신고 및 상급기관에 보고			
6.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피-가해자 분리 및 인사 이동 시 동일학교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기준에 명시			
소관부서	학교생활교육과(성인지교육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6-596 4208-371 4208-404

□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 성폭력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의1
- ◆ 여성가족부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 ◆ 교육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3조(전보의 특례)

□ 이행 계획

<학교생활교육과>

- ◆ 교육(지원)청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추진 계획」 수립
-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 및 체계적인 사안절차 추진
- ◆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고위직 별도 교육 지원
- ◆ 학교(기관) 내 고충상담원 원격연수 지원

<초등교육과>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및 각 교육지원청 인사관리세부기준 고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성폭력 사건의 피-가해자 분리 및 인사 이동 시 동일학교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중등교육과>

-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초등, 중등) 개정 시 제8조(비정기 전보) 제12호에 추가하여 2021.7.16. 개정 고시하였음
 - 제8조(비정기 전보) 12. 징계처분기록 말소 또는 사면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징계 처분 사안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분리가 필요한 자 (신설: 2021.7.16.)
- ◆ 성폭력 사건의 피-가해자 분리 및 인사 이동 시 동일학교에서 만나지 않도록 조치

제56조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및 규제 등】

② 교육청 주관 교장, 교감 등의 자격연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성평등 관련 교육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373 4208-404
----------------	------------------------------	-----	----------------------

□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이행 계획

- ◆ 연수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인천교육연수원에 협조 요청

제57조 【공익제보자의 인권보호】

-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에서 비리 관련 민원제기 및 내부고발한 사람의 인권 및 신분을 보호하고, 인사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 ② 교육청은 민원제기 및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공무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행정 조치를 한다.

소관부서	감사관(감사3팀)	연락처	4208-160
------	-----------	-----	----------

□ 근거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62조, 제62조의3 제64조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 이행 계획

- ◆ 민원제보자 보호 관련 법률 및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전 기관 홍보하여 내부 고발자의 인권 및 신분을 보호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제6장 교원 후생복지

제58조 【교원의 문화 활동 지원】

교육청은 직영하는 문화 체육 시설(교직원수련원, 학생교육원 등)을 교원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 관련 조례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단, 학생교육원은 학생의 수련 및 현장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소관부서	총무과(총무팀) 인천시교육청학생교육원(관리과)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4206-507 6276-767 4208-396
------	--	-----	----------------------------------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이용 조례

□ 이행 계획

- ◆ 수련원 등 시설 이용 신청 시 조례에 따라 승인

제59조 【교원의 후생복지】

① 교육청은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남·녀 휴게실을 각각 설치하고,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게실 설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교육시설과(시설팀)	연락처	420-7666
------	------------	-----	----------

□ 이행 계획

- ◆ 기존학교의 경우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비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권장
- ◆ 학교신설 설계 시 남·녀 휴게실을 반영하여 설계 및 공사하고 있음

제59조 【교원의 후생복지】

② 교육청은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 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 시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교육시설과(시설팀)	연락처	420-7669
------	------------	-----	----------

□ 이행 계획

- ◆ 신설 및 전면 개축 학교는 설계 시 학생탈의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는 학교장이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냉·난방 시설 등을 완비하고 학생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있음

제59조 【교원의 후생복지】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문화행사, 체력단련 등 교원복지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각 과(관) 공통	연락처	4208-322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내사항
 - 교직원복지 및 역량강화 - 교직원 문화행사, 체육행사

제59조 【교원의 후생복지】			
④ 교육청은 교무실, 연구실, 특별실 등의 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청정기 비치율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진공청소기 구입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체육건강교육과(학교보건팀)	연락처	4208-445

- 근거
 - ◆ 학교보건법 제4조의3
- 이행 계획
 - ◆ 공기정화장치 운영비 잔액 및 학교예산 범위내에서 교무실, 연구실, 특별실 등에 공기청정기 비치율 가능함을 안내함
 - ◆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급별로 진공청소기를 비치하도록 안내하겠음

제59조 【교원의 후생복지】			
⑤ 교육청은 맞춤형복지 점수 200점을 교사 건강검진비(격년제)로 부여하고, 결핵검진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총무과(총무팀) 체육건강교육과(학교보건팀)	연락처	4206-507 4208-444

- 근거
 -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 ◆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 「2021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변경(안)」(총무과-12743, 2021.9.15.)
- 이행 계획
 - ◆ <총무과> 2021년 9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변경(안)’ 시행에 따른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 지원 이행완료
 - ◆ <체육건강교육과>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23쪽) 안내

제60조 【교원연구비】

교육청은 교원연구비가 월 75,000원으로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403
------	--------------	-----	----------

□ 근거

- ◆ 교원지위법 및 동법 시행령

□ 이행 계획

- ◆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교원연구비 상향을 위한 교육부 협의 진행
- ◆ 교원연구비 월 75,000원으로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

제61조 【출장 여비와 연구비】

① 교육청은 교육 활동(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야영, 수학여행, 교외 특별 활동 등)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출장 중에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면 학교회계 편성 및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②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비)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전계획에 따라 교육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소관부서	교육재정과(경리팀)	연락처	4206-584
------	------------	-----	----------

□ 근거

- ◆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이행 계획

- ◆ 급여 유의사항 안내(규정 등에 의거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도)

제61조 【출장 여비와 연구비】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보결수업예산을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내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정책기획조정관(예산팀))	연락처	4208-374 4208-403 (4208-286)
----------------	--	-----	------------------------------------

□ 근거

-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 각급학교 보결수업 규정

□ 이행 계획

- ◆ 위 근거에 따라 현재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보결수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제61조 【출장 여비와 연구비】

④ 교육청은 교사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와 국내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소관부서	교육재정과(경리팀)	연락처	4206-584
------	------------	-----	----------

□ 근거

- ◆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이행 계획

- ◆ 관계규정의 내용을 각급기관에 안내

제62조 【체육복 및 실습복】

교육청은 교원의 실험 실습복, 중·고등학교의 체육담당 교사와 초등학교에서 체육 과목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체육복 및 운동화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조정관(예산팀)	연락처	4208-286
------	--------------	-----	----------

□ 근거

-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이행 계획

-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4, 15, 24p) 명시

☞ 학생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기본적 교육활동비 우선 확보, 피복비(교원의 실험 실습복, 중·고등학교의 체육담당 교사와 초등학교에서 체육과목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체육복 및 운동화)

제6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법령 등(규정, 예규, 지침 등)에 따라 출산휴가, 자녀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법령 등(규정, 예규, 지침 등)에 따라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4208-375
------	------------------------------	-----	----------------------

□ 근거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제5항, 제15항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 이행 계획

- ◆ 관련 법령 등(규정, 예규, 지침 등)에 따라 출산휴가, 자녀돌봄휴가,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학교 안내
- ◆ 관련 법령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모욕적인 언행 등을 받지 않도록 안내

제6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③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여교사의 출산휴가를 조산·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청은 여교원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4208-375

□ 근거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항, 제3항, 제10항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이행 계획

- ◆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른 출산휴가를 학교 안내
- ◆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 보건휴가 안내

제6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⑤ 교육청은 자녀 출산 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남교원의 특별휴가 10일이 보장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4208-375

□ 근거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항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이행 계획

- ◆ 관련 법령에 따라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경조사 휴가를 학교 안내

제6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⑥ 교육청은 출산한 여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370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4208-403

□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 이행 계획

- ◆ <초등교육과> 출산한 교원이 있어 필요한 경우 수유 공간과 제반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자 연수 시 안내하겠음
- ◆ <중등교육과 > 수유 대상 교사가 있고, 필요할 경우 수유 공간과 제반 시설(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이 확보되도록 관리자 연수 시 안내

제6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⑦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매 학기 초 육아시간 사용에 대해 안내하고 육아시간 사용 시 NEIS 상신 외에 별도의 구두보고 및 내부기안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한 교육청은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모욕적인 언행 등을 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협조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4208-375)
----------------	--------------------------------	-----	------------------------

□ 근거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5항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 이행 계획

- ◆ 관련 법령에 따라 NEIS 상신으로 시행 안내
- ◆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이나 모욕적인 언행 등을 받지 않도록 안내

제6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⑧ 교육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포함)후 1년 미만의 여교사에 대해서는 근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4208-375
------	------------------------------	-----	----------------------

□ 근거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4항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 이행 계획

- ◆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 안내

제6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⑨ 교육청은 육아휴직 교원이 복직하는 경우 원적교 복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4208-407 4208-375
------	------------------------------	-----	----------------------

□ 근거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3조

□ 이행 계획

- ◆ 관련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 시 원적교 우선 복직처리
- ◆ 불가피한 경우 교원 정원 수급에 따라 배치함

제7장 학생복지

제64조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① 교육청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 자체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온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관부서	교육재정과(계약관리팀)	연락처	4206-598
------	--------------	-----	----------

□ 근거

-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 현황

- 각급학교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심의 및 합리적 전기사용 추진을 통한 적정 냉난방온도 운영 중

□ 이행 계획

-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난방 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학교, 도서관, 민원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사무 공간은 제외)의 경우 학교 등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며 각급 기관은 이에 맞춰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교육재정과-21916(2021.12.2.), 2022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알림]

제64조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② 교실의 조도는 300룩스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소관부서	체육건강교육과(학교보건팀)	연락처	4208-445
------	----------------	-----	----------

□ 근거

- ◆ 학교보건법 제4조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이행 계획

- ◆ 매년 환경위생점검을 실시하여 환경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고, 법정 기준 내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제64조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③ 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내 소음이 법정 기준 내로 유지되도록 한다.

소관부서	체육건강교육과(학교보건팀)	연락처	4208-445
------	----------------	-----	----------

□ 근거

- ◆ 학교보건법 제4조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이행 계획

- 매년 환경위생점검을 실시하여 환경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고, 법정 기준 내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제64조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④ 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의거 각급 학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교육시설과(시설총괄팀)	연락처	420-7656
------	--------------	-----	----------

□ 근거

-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이행 계획

- ◆ 연 3회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 ◆ C등급 이하 시설물 현황 관리 및 지원

제64조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⑤ 교육청은 학교 시설에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며, 학교 신·개축 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시설과(시설총괄팀,시설팀,공업팀)	연락처	420-7656,669,677
------	----------------------	-----	------------------

□ 근거

- ◆ 석면안전관리법
-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환경보건법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이행 계획

- ◆ (현황)
 - 상기 법령에 의거 친환경 자재를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도료, 바닥재 등에 대하여 환경표지인증 제품 또는 방출기준 미만 자재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연면적 3,000㎡이상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 시 녹색건축 인증취득

- 연도별 녹색건축 인증 취득 현황

구분(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녹색인증 취득학교수	10	11	8	2	10	5	3	3	6	3	8

- 석면 건축물(학교)은 냉난방개선 사업 등과 병행하여 2027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시행하고 있음

◆ (추진방향)

- 연 2회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실시 및 관리
- 석면보유교에 대한 석면교체공사 실시
- 공사 진행 시 환경표지 인증 제품 사용
- 신축·증축·개축 사업은 각 교실 내 기계환기장치 설치 및 베이크아웃(Bake-out) 실시 등 새집 증후군 완화
- 초등학교 이하 교육환경개선 사업 시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 검사 실시

□ 참고사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한다.

⑥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 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할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3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64조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⑥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위생용품이 비치되도록 지도하고,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실의 경우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예산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청소업체와 계약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예산 편성을 지도한다.			
소관부서	체육건강교육과(학교보건팀)	연락처	4208-445

□ 근거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 ◆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이행 계획

- ◆ 관련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유치원)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위생용품 수거함 등 편의용품을 비치토록 안내하겠음
- ◆ 학교예산 범위내에서 학교의 실정에 맞게 일시적으로 청소업체와 계약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제64조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⑦ 교육청은 지하수, 상수도 등 먹는 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소관부서	체육건강교육과(학교보건팀)	연락처	4208-445

□ 근거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학년도 인천교육계획

□ 이행 계획

-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교보건팀(강화는 교육지원과 학생건강복지팀)에서 정수기 수질검사를 지원한다.
- ◆ 학교지원단에서 학교 저수조·옥내급수관·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원한다.

제65조 【학생 복지】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 매점 및 자판기가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금지품목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소관부서	체육건강교육과(학교보건팀)	연락처	4208-445

□ 근거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 고시 제2021-10호)

□ 이행 계획

- ◆ 구내매점을 학교장으로 하여금 월 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지도
-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교보건팀(강화는 교육지원과 학생건강복지팀)에서 학교 매점의 식품 판매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

제65조 【학생 복지】

② 교육청은 학교 화장실 용변기 개수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화장실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소관부서	교육시설과(시설팀)	연락처	420-7670
------	------------	-----	----------

□ 근거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이행 계획

- ◆ 신설학교 설계단계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용변기 개수를 설계중이며, 화장실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검토·반영중

제65조 【학생 복지】

③ 교육청은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용품(생리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소관부서	체육건강교육과(학교보건팀)	연락처	4208-447
------	----------------	-----	----------

□ 근거

-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동법 제18조(경비보조)

□ 이행 계획

- ◆ 청소년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학교에 비치하도록 여성용품 구입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제65조 【학생 복지】

④ 교육청은 학교 신·개축 및 화장실 사업 시 여학생 대변기 수를 남학생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화장실 시설은 학생들의 체형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화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교육시설과(공업, 시설팀)	연락처	420-7676, 670
------	----------------	-----	---------------

□ 근거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이행 계획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교 신·개축 및 화장실 사업 시 남학

생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

- ◆ 학교 신·개축 및 화장실 사업 시 학생들의 체형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화 검토·반영

제65조 【학생 복지】

⑤ 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차인권교육팀)	연락처	4208-263
------	----------------------	-----	----------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2020.7.13. 인천광역시 조례 제6415호)
- ◆ 「2022 인천교육계획-주요사업 3-2. 학교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기반 지원-다.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인권교육 강화-노동인권교육 및 보호」(인천광역시교육청, 2021. 12.)

□ 이행 계획

- ◆ 모든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2시간) 운영
-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초중고 표준 교안 개발

제66조 【학생 자치활동】

① 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차인권교육팀)	연락처	4208-262
------	----------------------	-----	----------

□ 근거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17조, 제18조, 제19조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이행 계획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전 기관 안내
- ◆ 교육청 소속 인권보호관을 통한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제66조 【학생 자치활동】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차인권교육팀)	연락처	4208-252
------	----------------------	-----	----------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이행 계획

- ◆ 모든 중, 고등학교에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지원(200만원) 및 컨설팅

- ◆ 학생회의 자율적인 편성 및 집행 권한을 공문으로 안내
- ◆ 우리학교 학생 100인 토론회 사업을 통해 학생으로부터 학교 운영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을 통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 교육계획 수립·운영 지원

제66조 【학생 자치활동】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학생 자치활동 공간(학생회의실 등)을 확보하고 일정규모 이상 쾌적한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관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학교자치·인권교육팀)	연락처	4208-252
------	-----------------------	-----	----------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이행 계획

- ◆ 영역 단위 공간혁신 사업으로 학생자치실 구축 운영 지원('22년 19교, 누적 86교) 및 컨설팅

부 칙

제1조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 【협약갱신】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 · 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이행계획서 작성】

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초안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작성한 뒤, 인천교사노조와 의견 조율을 거쳐 국공립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에 배포한다.

제5조 【이행방법】

- ①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는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계획 및 결과를 정책협의회에서 점검한다.
- ② 교원노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이행 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연 2회 인천교사노조가 요구하는 단협 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통해 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 이행학교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 등 그 이행을 지도하며 이행결과를 정책협의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④ 교육청은 본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공문 시행 등의 방법으로 학교장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소속 직원에게 안내한다.

- ⑤ 교육청은 각급 학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시 인천 교사노조에서 요구하는 주요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 ⑥ 교육청은 각 과 업무 계획 및 추진 시 단체협약과 상호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 ⑦ 교육청은 본 협약의 예산 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 ⑧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및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II 2022년 단체협약서

전 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인천교사노동조합(이하 “인천교사노조“라 한다)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 및 공립학교 교원인 인천교사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이 협약에서 학교는 공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를 모두 포함한다. 교육청은 본 협약의 내용 중 공사립 교원의 지위 향상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2조 【협약의 존중 및 타 단체와의 관계】

- ① 교육청은 본 협약 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교사노조와 협의 없이 그 내용을 저하시킬 수 없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인천교사노조와 체결한 협약과 다른 단체의 교섭요구안이 상충될 경우 해당 안전에 대하여 인천교사노조와 사전 협의한다.
- ③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에게 타 교직단체 및 공무원노조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불평등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없도록 한다.

제3조 【조례·규칙의 제·개정】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교사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① 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교육청은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단위학교장이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조합 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
 2.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의 정책협의회
 3. 대의원과 중앙위원으로서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참석
 4. 노조 집행위원으로서 집행위원회 참석
 5. 조합원 대상 연수 및 행사
 6. 집행부의 조합원 대상 교원노조 업무 수행
- ④ 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사노조가 주관하는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내·외 조합원 교육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⑤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사 노사관계 형성과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의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사관계의 이해 연수 실시와 인천교사노조의 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에서 교직원단체 홍보 자료의 게시 및 배포를 허용한다.
- ⑦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의 전임자가 임기를 마치고 복귀할 시에는 원칙으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 ⑧ 교육청은 다른 교섭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교육청 홈페이지 하단 배너 영역에 인천교사노조 홈페이지 연결 배너를 설치한다.
- ⑨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학교 내 게시관 설치를 희망할 경우 학교 시설 사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⑩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 활동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 ⑪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최하는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에 인천교사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⑫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 전임자 허가 신청 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한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승진, 연금산정, 전보인사 또는 그 밖에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⑬ 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분기별 4시간 이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⑭ 인천교사노조가 지정하는 전임자에게 ice-talk 메신저 계정을 제공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5조 【노조 활동 중 재해】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의 전임자 또는 비전임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 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상재해보상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 【인천교사노조와 사전 협의】

교육청은 공무원노조 등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교사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제7조 【부당노동행위 예방】

- ①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원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연수 과정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사 관련 과목의 개설·운영에 있어 사전에 교원노조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시설 편의제공】

- ①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사무실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통상적인 비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조합비 일괄 공제】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대상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지정계좌에 예금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동의한 조합원에 한하여 인천교사노조에 공제 내역을 통보한다.

제10조 【통지 및 문서 발송 편의제공】

- ①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 정보에 대하여 열람과 사본의 제공을 허용한다.
- ②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 교육청 제공 사항

가. 교육청 및 직속 기관의 조직표

나. 교육통계연보 등 교육청 등록 각종 간행물

다. 각급 학교에 보내는 공문 중 노조가 요구한 공문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교육정책 관련 등)

라.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사항

마. 단체협약 이행 관련 공문

바.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등

사. 각급학교에 배부되는 정부, 교육부, 교육청 간행물 중 노조가 요구한 자료

2. 인천교사노조 제공 사항

가. 규약의 변경사항

나. 인천교사노조의 임원 현황

다. 인천교사노조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 ③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교육청에 각종 문서를 발송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첩을 요구할 경우 교육적으로 필요한 문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정책협의회 구성 · 운영】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사항 협의, 인천교육정책,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 운영한다.

1. 협의는 반기별로 1회, 3시간 내로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 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는 양측 협의에 의해 추가 개최한다.

2. 교육청 대표는 국장급 이상으로 하고, 1회는 교육감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

협약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협약 안건은 2주일 이전에 통보한다.
4. 개최시기-협약안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3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

제1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 ①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 처리 단계에서는 원자료 열람 요청 처리,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 활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 관리자인 교감이 직접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제13조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를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교원 차등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① 교육청은 2급 정교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대한 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연수 여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단, 학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제외한다.)
- ③ 교육청은 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 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연수 기관에 납부하는 연수경비의 교원 1인당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출장처리 할 수 있다.
- ④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는 학교당 일률적인 인원배정을 지양하고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단, 의무연수과정은 예외로 한다.
- ⑤ 교육청은 초등학교 과학과 실험 연수와 관련하여 교사의 연수선택권을 존중

하며 질 높고 다양한 형태의 연수로 개설하되,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⑥ 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주관 연수프로그램 편성 시 교원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인천교사노동조합에서 의사를 개진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 ⑦ 교육청은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⑧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장 ·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자격연수가 학기와 중복될 경우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보장을 실시할 강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 ⑨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를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자율연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⑩ 교육청은 민간·공공기관(단체)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특수분야 연수기관 심의·관리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하며, 연 2회 신청·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연 1회 추가 신청·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 ⑪ 교육청은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은 이후에 교사가 희망할 경우, 교과별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일정 기간마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⑫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기중 선발연수에 교사가 선발되었을 경우, 강사채용을 통해 해당 교사가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⑬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내 자율장학 계획 외에 별도로 수업장학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안내한다.
- ⑭ 교육청은 자율연수비 지원을 유, 초, 중, 고, 특수, 기타, 각종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
 - 가. 교육부 장관 및 17개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자율연수(특수분야, 원격연수와 관련된 연수 경비: 학습 중인 연수 교재비 포함)
 - 나. 교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 연수 (예: 교과교육, 생활지도(교육), 상담 등)
 - 다.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
 - 라. 직무 관련 공인(국가, 민간) 자격증 취득 연수
- ⑮ 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율연수비를 지원할 때 교원 1인당 연수 경비를 횡수 제한 없이 연수경비(여비제외)의 100%(최대 250,000원)까지 하도록 권장한다.

제15조 【연구 환경 조성】

- ① 교육청은 교사들이 자율적인 교과 모임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며, 전문성 있는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 및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학습 연구년제가 합리적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에 교과·학년별 연구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교과·학년 협의회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 ⑤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교원의 교육강사수당 강사료 기준 변경 시 관련 부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교원이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경우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컨설팅 장학】

컨설팅 장학은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장학위원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다.

제17조 【연구·시범학교 및 각종 공모사업 운영 개선】

- ① 교육청이 자체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 공모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이전(전년도 말)에 완결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학기 중에 추가로 공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연구·시범·교육실습협력학교 및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교직원협의회를 반드시 거쳐 교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응모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에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 대해 제반 사항을 전 교사에게 안내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연구·시범학교 공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다.

제18조 【교원 승진 및 인사 제도 개선】

- ① 교육청은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사승진체계가 마련되도록 교장, 교감 및 교육 전문직 인사의 임용 및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가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지정을 신청할 때, 사전에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19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도록 지도한다. 각 학교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 1. 교무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2.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3. 교과 전담교사와 학급 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 4. 포상 후보자와 해외 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5. 기타 교원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 ②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에 대하여 학교장은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한다.

제20조 【교원인사관리 원칙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은 교원 인사 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인천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21조 【전보 제도】

- ① 교육청은 교사초빙제가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하고, '교사초빙제 운영 지침' 유의사항의 적용을 지도하여 초빙교사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시 학사 일정과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1월 안에 실시한다.
- ③ 교육청은 성희롱 및 교권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긴급 전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본인의 전보 자료를 공개 요청할 경우 본인의 자료에 한하여 공개한다.
- ⑤ 교육청은 교육과정운영과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원의 희망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⑥ 교육청은 전입 예정 학교에 업무분장, 임시 출근 등의 사유로 방문해야 할 때 현 소속 학교에서 출장 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22조 【법정 교원 수 확보 및 교육 지원 강화】

- ① 교육청은 정규직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행 · 재정적 노력을 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에서 사회복지무요원을 신청할 경우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하 수준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23조 【학습지도안의 자율적 작성】

- ① 교육청은 학습지도안, 주간학습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폐지하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이수 집계표는 수기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연간지도계획은 교과, 학년 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교내 장학 수업 및 학부모 공개수업 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제24조 【교원 업무 정상화】

- ① 교육청은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 업무 분장 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업무표준안 작성을 위한 사업부서별 업무협의회 운영 시 인천교사노조를 포함한다.
- ③ 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직종별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시 관련 교사를 포함하여 협의하도록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법정 장부 이외의 학교장 장부, 비업무 승인장부, 기타 장부는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되,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교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치하도록 지도한다.
- ⑤ 교육청은 외부행사 안내, 각종 소식지, 공통지시 전달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노력하되, 학부모의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 ⑥ 교육청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교육외적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 ⑦ 교육청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회의록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 ⑧ 교육청은 학교장이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여 결재과정을 간소화하도록 지도

한다.

- ⑨ 교육청은 국회·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급적 이미 구축된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한다.
- ⑩ 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과서 관련 업무 중 교과서 선정 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지도한다.
- ⑪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교사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 ⑫ 교육청은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지도한다.
- ⑬ 교육청은 교사의 방과후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예산 관련 업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를 포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 ⑭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돌봄 관련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⑮ 교육부 지침(교수학습평가과-5336, 2021. 8.9)에 따라 교육청은 방역 인력 채용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 ⑯ 교육청은 방과후강사, 기간제 교사 등의 성범죄 조회 업무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
- ⑰ 교육청은 관계회복과 소통중심의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이 정한 바 이외에 불필요한 보고 및 공문발송 등을 축소하도록 노력한다.
- ⑱ 교육청은 법령에 의한 교직원 의무교육 및 연수(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를 통합개설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학년 초에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⑲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CCTV관련 업무 추진 시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하고 관련 부서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지도한다.
- ⑳ 교육청은 스쿨뱅킹 미납 학생 독촉 업무 등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㉑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전출입 관련업무 분장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
- ㉒ 교육청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답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㉓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전문업체가 실시하는 연 1회 이상의 교내외 대청소를 예산에 편성·운영하도록 지도한다.
- ㉔ 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및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통번역 및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제25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 ① 교육청은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별 실정에 맞는 부서체계와 업무분장을 조직·운영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수업시수 협의 시 학교별·교과별 교사 현황 및 특성,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학년, 교과협의회 등)을 거쳐 조정하도록 권장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사가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 ④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복무 결재권자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 복무를 NEIS로 승인하며, 사전 대면 또는 구두 보고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⑤ 교육청은 법령에 의무 규정되지 않은 서약서는 폐지한다.
(학생에게 징구하는 서약서:학교생활교육과)
- ⑥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은 단위학교에서 교사결원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제교사 운영 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사 및 시간 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⑦ 학교지원단은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운영하여 단위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및 강사 채용 시 필요한 서류를 지원한다.
- ⑧ 학교장은 부득이 해당학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적정액의 보결 수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 ⑨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업무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⑩ 교육청은 학급 내 위기학생 발생 시 관리자가 협력하도록 지도한다.
- ⑪ 교육청은 필요한 문서만 발송하도록 ‘문서통제관’을 지정하여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 ⑫ 교육청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의 제목 앞에 ‘제출’, ‘참석’ 등의 공문서 성격을 표시하는 ‘공문서 성격표시제’를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 ⑬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관리시스템과 ice-talk 메시지를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⑭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특근매식비가 교사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26조 【근로 및 휴게 시간】

- ① 교육청은 교사의 초과근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교사의 자기 연찬 기회 확대를 위해 유,초,중,고등,특수,각종,기타 학교에서 교사의 방학 중, 재량휴업일, 기타휴업일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
- ③ 교육청은 방학과 재량휴업일에 들봄교실이나 도서관, 방과후 수업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근무를 명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학생교육활동 관련하여 근무가 필요한 경우 학교 구성원의 토론과 투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하여 운영 사항을 결정한다.
- ④ 교육청은 휴직자 또는 신규임용예정교사의 의사에 따라 새학년 준비 목적의 의무 출근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제27조 【생활기록부 업무 간소화】

교육청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성적(교과 학습발달 등), 종합의견 외에 진로 희망 사항, 독서기록, 방과 후 활동, 자격증 인증,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기록항목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지침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28조 【직위에 따른 구분】

교육청은 직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청은 일부 과밀 학급의 학습여건 개선과 함께 대규모 학교의 학습 및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0조 【교수 · 학습과정】

- ① 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노조에서 추천한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 ·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
- ③ 교육청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 간 교원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수전공,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⑤ 교육청은 문예체 분야의 협력 수업 지원 사업을 지속한다.
- ⑥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교사 고유의 교수학습권과 평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31조 【민주적인 학교운영】

- ① 교육청은 교직원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무회의 및 각종 협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제32조 【교구 및 교과서 선정】

교구 및 교과서 선정은 교과 협의회 추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제33조 【방과 후 활동】

- ①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교사가 실시하도록 하며,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형태의 교과 보충수업, 선행 교육 및 성적에 따른 일부 학생에 대한 예산지원 등 비교육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초·중학교의 경우 경시대회와 특목고 진학을 목적으로 한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 및 경시대회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부재 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한다. 부득이하게 교사가 대체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유치원돌봄 포함)의 마을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하여 학생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업무경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초·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행정업무로 인해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⑦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의 원격 수업 시,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지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34조 【자율학습 등】

- ① 교육청은 자율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경비를 징수하거나 불법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중·고등학교의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초과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35조 【감사제도】

- ① 교육청은 학교 감사 시 교원의 교무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는 가급적 교육 전문직이 담당하도록 하고, 학교자율종합감사를 확대·운영한다.
- ② 교육청은 감사결과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고 공통지적 사항 사례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안내한다.
- ③ 교육청은 특별감사 시 당해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에 인천교사노조가 감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 【교육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합리화】

- ① 교육청은 학교예산 편성 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예산 및 결산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공개 방법으로 교직원, 학부모에게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37조 【학부모 부담 교육비 경감】

교육청은 교복, 체육복구매, 졸업앨범 제작,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학부모부담경비 사업에 있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

제38조 【학급운영비】

- ① 교육청은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급운영비는 연간 학급당 3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학급운영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집행토록 지도한다.

제39조 【사립학교 지도·감독】

- ①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사의 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정규 교원 비율이 가급적 공립학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공립과 동등한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사립학교 내에서 부당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제40조 【학교평가 개선】

- ① 교육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학교평가 결과는 학교 운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자료로 활용한다.

제4장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제41조 【공립유치원 확대】

- ①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교원 정원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 1.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2. 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원아수용 여건 충족 시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을 설치한다,
- ③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혼합학급 포함) 유아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한다.
- ④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원아수를 각 항과 같이 감축하도록 추진한다.
 - 1. 만5세 학급은 26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 만4세 학급과 만 4,5세 혼합학급은 22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 3. 만3세 학급은 16명 이하로, 만 3,4,5세 혼합학급은 20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42조 【공립유치원 정책 마련 및 의견 수렴】

- ① 교육청은 인천광역시유아교육위원회에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② 교육청은 인천미래유아교육협의회에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43조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

- ① 교육청은 조직개편 시 유.초등교육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도록 노력하고 유

아교육 관련 부서 인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유아교육 전문직(장학관, 장학사)이 적정 인원 선발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유치원 (겸임)관리자의 누리과정 이해 증진과 민주적인 유치원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유치원 (겸임)관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 ④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전문직의 현장 이해 증진과 민주적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여 실시한다.
- ⑤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공립유치원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 ⑥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누리과정에 명시된 운영시간(1일 4~5시간)을 융통성있게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을 보장하며, 출근 시간 이전 및 퇴근 시간 이후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⑧ 유치원장은 교육과정 보결수업이 필요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공립유치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보결수업비를 지급한다.
- ⑨ 교육청은 신체활동, 바깥놀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피복비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지원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⑩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서 미세먼지 및 기상악화로 인해 바깥놀이를 하지 못할 경우, 대근육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희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⑪ 교육청은 감염병 등으로 인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립유치원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고 노트북을 지급한다.
- ⑫ 교육청은 유치원 원내 체험학습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 따라 누리과정 내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⑬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중식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제44조 【공립유치원 업무 정상화】

- ①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내 의견 수렴 및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②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제출 공문 중 동일한 사항에 한해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통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자료집계를 요구하지 않으며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 공휴일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 ④ 교육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외에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지양하도록 안내한다.
- ⑤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및 학급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과후 과정 업무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 ⑦ 교육청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에서 ‘방과후 과정 업무 담당자’ 지정 문구를 삭제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의 업무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⑧ 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 강사의 부재 시, 대체인력을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부득이하게 유치원 교사가 담당할 경우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한다.
- ⑨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종일제(보결전담)강사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 ⑩ 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법령에서 정한 복무·업무분장·근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⑪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시 유치원교사를 포함하여 협의한다.
- ⑫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육실무 지원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시 유치원교사를 포함하여 협의한다.

제45조 【특수교육 정상화】

- ① 교육청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실현성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의 급당인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에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에 따라 특수학교 및 각급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역할,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행동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를 운영한다.
- ③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도전 행동으로 인한 교사의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과 관련한 교사 보호 조치 및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
- ④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의 행동문제로 인해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

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특수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가급적 특수학급 업무 이외의 별도 업무를 부가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⑥ 교육청은 특수교사에게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돌봄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⑦ 교육청은 기관 소속의 특수교육 순회교사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⑧ 교육청은 특수교육 관련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 등에서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강조한다.
- ⑨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공무직 및 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의무연수를 원격과 집합연수로 관리한다.
- ⑩ 교육청은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2018.12.19.)에 따라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및 상담사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⑪ 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⑫ 교육청은 특수교육 업무 정상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급 처리 방식을 치료지원비 지급방식과 동일한 카드 결제 방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 ⑬ 교육청은 특수교사에게 사회복지무원(특수)의 급여지급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46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및 사서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 ①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서교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1학교 1사서교사 배치를 목표로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의 사서교사 정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및 효율적 컨설팅을 위해 학교 도서관 운영을 전담할 사서교사 교육 전문직을 선발·배치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주말 방학중(휴무일 포함)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경우, 단위학교에서 이에 따른 필요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복무와 업무분장, 근무시간에서 다른 교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⑥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 지원 역할과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독서교육 및 독서생활지도를 위해 신설되는 통합학교(초등·중등)의 각

급간에 사서교사를 별도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불가능할 경우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제47조 【보건교육 및 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

- ①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환경위생관리 업무 중 시설과 관련된 업무가 보건교사에게 부여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렌탈 등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④ 교육청은 공기질 검사, 정수기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제48조 【장애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 ① 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의 처우 개선 및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계획, 전보 등 주요 정책수립 시 장애인교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원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의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 인력의 원활한 직무 역할 수행을 위해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인력에 대한 연수 및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 ④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발령 및 희망 근무지에 대한 의사를 반영하여 임용 · 전보하도록 노력한다.

제49조 【학교 급식의 개선】

- ① 교육청은 GMO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정책을 수립하여 학교급식에 건강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급식시설 현대화(오븐기, 냉·난방 시스템 등)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50조 【학기 중 미급식일 중식지원업무 및 무상우유지원 문제 해소】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행정력 낭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기 중 미급식일(현장체험학습일 등)의 중식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재량휴업일은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무상우유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1조 【영양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와 올바른 영양관리 및 영양·식생활교육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교육청 예산 및 정원 내에서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1일 2식 실시 교
2. 통합학교(유·초·중·고)
3. 과밀학교(학생수 1300명 이상 교)

제52조 【고교학점제 운영】

- ① 교육청은 기관 소속 고교학점제 교과전담순회교사를 운영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에 고교학점제운영에 필요한 사항(각종 규정, 계획서, 과목 안내서 등)을 지원한다.
- ③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 시 최소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학교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계획과 지원에 관하여 현장 교원 및 교직원단체의 의견 수렴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제5장 교권

제53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 ①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히 침해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입법화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사단체가 추천하는 평교사를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단, 현재 교원위원 임기까지는 유예)
- ③ 교육청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사안(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안)발생 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천교사노조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다.
- ④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관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교육청에 접수되면 해당 학교를 관리·감독한다.
- ⑤ 교육청은 연 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를 보급하여 각급학교가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급 학교는 연 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⑥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수업방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거부를 행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학교는 교육구성원의 합의하에 징계 외 생활지도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
- ⑦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대처 방안을 매뉴얼화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 ⑧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 ⑨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⑩ 교육청은 학교 내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접수된 사안의 종류와 경중을 고려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가 조사·판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⑪ 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⑫ 교육청은 교사가 아동 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원장)명의로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⑬ 교육청은 상담활동 중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사의 심리적 피해 및 소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제54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

- ① 교육청은 교원의 각종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배상 책임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 및 치유비 지원은 학교장 또는 피해 교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한다.
- ③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 ④ 교육청은 교육 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⑤ 교육청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녹취시스템을 이용한 통화 녹음을 지원하고 녹취 청취 및 다운로드 방안을 마련·안내한다.
- ⑥ 교육청은 학교 민원 전화 시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자동응답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⑦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48조와 『사립학교법』 제60조 및 『교원의 지

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현직 교원이 현행 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⑧ 교육청은 학교에서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과정 강사에게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고 관련 연수를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 ⑨ 교육청은 교원단체와 교권관련 협의회를 연2회 이상 운영하며,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⑩ 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위원회에 인천교사노조에서 추천한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⑪ 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피소를 당할 경우 민사·형사상 소송비용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요건에 따라 지원한다.
- ⑫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의 상담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5조 【교사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보호】

-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전보 시에 포털기사 등으로 교사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보 내용이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졸업앨범에 해당 교원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올리도록 지도한다.
- ④ 교육청은 온라인 상에서 교원의 동의 없이 사진 또는 동영상이 공유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지원한다.
- ⑤ 교육청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56조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및 규제 등】

- ① 교육청은 학교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 1. 연 1회 이상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 5.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

인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련 기관 신고 및 상급기관에 보고

6.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피-가해자 분리 및 인사 이동 시 동일학교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기준에 명시
- ② 교육청 주관 교장, 교감 등의 자격연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성평등 관련 교육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7조 【공익제보자의 인권보호】

-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에서 비리 관련 민원제기 및 내부고발한 사람의 인권 및 신변을 보호하고, 인사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 ② 교육청은 민원제기 및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공무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행정 조치한다.

제6장 교원 후생복지

제58조 【교원의 문화 활동 지원】

교육청은 직영하는 문화 체육 시설(교직원수련원, 학생교육원 등)을 교원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 관련 조례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단, 학생교육원은 학생의 수련 및 현장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제59조 【교원의 후생복지】

- ① 교육청은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남·녀 휴게실을 각각 설치하고,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게실 설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장한다.
- ② 교육청은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 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 시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문화행사, 체력단련 등 교원복지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교무실, 연구실, 특별실 등의 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청정기 비치율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진공청소기 구입비는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⑤ 교육청은 맞춤형복지 점수 200점을 교사 건강검진비(격년제)로 부여하고, 결핵검진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60조 【교원연구비】

교육청은 교원연구비가 월 75,000원으로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제61조 【출장 여비와 연구비】

- ① 교육청은 교육 활동(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야영, 수학여행, 교외 특별 활동 등)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출장 중에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면 학교회계 편성 및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②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비)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전계획에 따라 교육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보결수업예산을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교사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62조 【체육복 및 실습복】

교육청은 교원의 실험 실습복, 중 고등학교의 체육담당 교사와 초등학교에서 체육과목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체육복 및 운동화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6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법령 등(규정, 예규, 지침 등)에 따라 출산휴가, 자녀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법령 등(규정, 예규, 지침 등)에 따라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여교사의 출산휴가를 조산 · 유산 · 사산의 경우에도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 ④ 교육청은 여교원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⑤ 교육청은 자녀 출산 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남교원의 특별휴가 10

일이 보장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 ⑥ 교육청은 출산한 여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⑦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매 학기 초 육아시간 사용에 대해 안내하고 육아시간 사용 시 NEIS 상신 외에 별도의 구두보고 및 내부기안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한 교육청은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모욕적인 언행 등을 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⑧ 교육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포함)후 1년 미만의 여교사에 대해서는 근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⑨ 교육청은 육아휴직 교원이 복직하는 경우 원적교 복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7장 학생복지

제64조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 ① 교육청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온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② 교실의 조도는 300룩스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내 소음이 법정 기준 내로 유지되도록 한다.
- ④ 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의거 각 급 학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학교 시설에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며, 학교 신·개축 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⑥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위생용품이 비치되도록 지도하고,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실의 경우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예산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청소업체와 계약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예산 편성을 지도한다.
- ⑦ 교육청은 지하수, 상수도 등 먹는 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65조 【학생 복지】

-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 매점 및 자판기가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금지품목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 화장실 용변기 개수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화장실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용품(생리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④ 교육청은 학교 신·개축 및 화장실 사업 시 여학생 대변기 수를 남학생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화장실 시설은 학생들의 체형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화되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66조 【학생 자치활동】

- ① 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 학생 자치활동 공간(학생회의실 등)을 확보하고 일정 규모 이상 쾌적한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 칙

제1조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 【협약갱신】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 · 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이행계획서 작성】

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초안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작성한 뒤, 인천교사노조와 의견 조율을 거쳐 국공립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에 배포한다.

제5조 【이행방법】

- ①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는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계획 및 결과를 정책협의회에서 점검한다.
- ② 교원노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이행 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연 2회 인천교사노조가 요구하는 단협 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통해 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 이행학교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 등 그 이행을 지도하며 이행결과를 정책협의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④ 교육청은 본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공문 시행 등의 방법으로 학교장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소속 직원에게 안내한다.
- ⑤ 교육청은 각급 학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시 인천교사노조에서 요구하는 주요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 ⑥ 교육청은 각 과 업무 계획 및 추진 시 단체협약과 상호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 ⑦ 교육청은 본 협약의 예산 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 ⑧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및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제6조 【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22. 4. 8.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 혜 지